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이 책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에는 상업용이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지서비스에서
일자리 정보까지
언제든 가깝고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 **복지로(www.bokjiro.go.kr)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통합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에 접속한 후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365일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민센터(읍·면 사무소·동주민센터)**
전화나 방문을 통해 복지 관련 상담과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 복지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107 손말이음센터(www.relaycall.or.kr)**
각종 문의에서 쇼핑, 병원진료 예약, 구직, 회사 업무 통화, 가족, 친구와의 연락까지 청각, 언어장애인의 귀와 입이 되어 드립니다.
- ✓ **워크넷(www.work.go.kr)**
국가 취업포털 사이트로 일자리 채용정보,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안내 등 다양한 고용정보로 취업에 도움을 드립니다.
-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내게 맞는 주거복지 자가진단 서비스, 임대주택 찾기'와 같은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구직자와 재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와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세부훈련정보를 제공합니다.



CONTENTS

복지서비스 가이드

복지가 궁금하신가요?

- 대한민국 복지서비스를 대표하는 주요사업 50 10
- 가이드북 소개 및 활용법 12
- 알려드립니다 14
- 복지는 쉽다 16

생계지원 서비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20
-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24
-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27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43
-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56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64
-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65
-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72
- 여성이 기업 운영을 원할 때 73
-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77
-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82

임신·보육·교육 지원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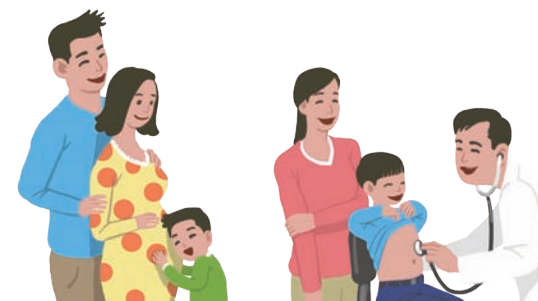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지요?

-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90
-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99
-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104
-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111
-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117
-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119
-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133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156
-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161
-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을 때 165
-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168
-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170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173



CONTENTS

노령층 지원서비스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178
-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182
-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183
- 치매가 걱정될 때 186
-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188
-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192
-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195

장애인 지원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 200
- 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204
-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208
-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212
-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219
-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228
-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236
-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243
-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246
- 각종 요금을 감면 받고 싶을 때 248

보훈대상자 지원서비스

국가를 위해 희생이나 공헌을 하셨나요?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252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276
-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296
-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304
-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312
- 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313
-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317
-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 326

복지서비스 찾아보기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고 싶으신가요?

-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 330
-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 서비스 목록 343
- 가나다순 서비스 목록 372
- 주요기관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384



대한민국 복지서비스를 대표하는 주요사업 50



- 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p)
- 2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23p)
- 3 긴급복지지원제도 (24p)
- 4 행복주택 공급 (28p)
- 5 장기전세주택 임대 (31p)
- 6 기존주택 매입 임대 (32p)
- 7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시) (43p)
- 8 통합문화이용권 (59p)
- 9 실업급여 (64p)
- 10 취업성공패키지 (65p)
- 11 내일배움카드제 (66p)
- 12 희망키움통장(I, II) (69p)
- 13 근로장려금 (70p)
- 14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72p)
- 1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93p)
- 16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99p)
- 17 만 0~5세 보육료 지원 (104p)
- 18 가정양육수당 지원 (106p)
- 19 아이돌봄서비스 (107p)
- 20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14p)
- 21 초등돌봄교실 (117p)
- 22 지역아동센터 지원 (118p)
- 23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123p)
- 2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28p)
- 25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34p)
- 26 건강보험제도 (156p)
- 27 건강보험 차상위 (157p)
- 28 의료급여제도 (161p)
- 29 국가건강검진제도 (168p)
- 3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70p)
- 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73p)
- 3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74p)
- 33 기초연금제도 (178p)
- 34 주택연금제도 (180p)
- 35 노인 사회활동 지원 (182p)
- 36 치매검진 지원 (186p)
- 37 노인틀니 지원 (189p)
- 38 노인치과임플란트 지원 (190p)
- 39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195p)
- 40 장애인연금 (200p)
- 4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212p)
- 42 장애인 일자리 지원 (215p)
- 43 장애인 활동 지원 (236p)
- 44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248p)
- 4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76p)
- 46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79p)
- 47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282p)
- 4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290p)
- 49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296p)
- 50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313p)

가이드북 소개 및 활용법



1

이 책은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려운 일, 혼자 헤쳐 나가려 하지 마세요

빈곤, 실직과 사업실패, 장애와 고령, 갑작스런 사고와 건강 악화까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바로 곁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책은 보다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가까이에 많은 복지서비스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 복지서비스가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명을 아시는 경우에는 372p에 수록된 '가나다순 서비스 목록'을 참고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를 찾고 싶다면

이 책의 330p에 수록된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와
343p에 수록된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 서비스 목록」을 참고하세요.

어려운 용어가 나온다면

「알려드립니다」,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책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보건복지콜센터(☎129)나 해당사업의 문의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며,
주요기관 연락처는 384p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

3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찾아볼 수 있게 상황별로 373개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빈곤의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20p), 긴급복지지원제도(24p),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택임대 사업(27~34p), 창업자금 지원(50~51p) 등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분

생계비를 지원하며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실업급여(64p), 취업성공패키지(65p), 내일배움카드제(66p), 근로장려금(70p) 등

임신, 출산, 보육을 걱정하는 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92~95p), 보육 지원(104~110p), 방과후 돌봄(117~118p) 등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제도(156p), 건강보험 차상위(157p),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73p) 등

노후를 걱정하는 어르신

재정적인 도움을 비롯해, 의료,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178p), 노인사회활동 지원(182p), 치아관리비용 지원(189~190p) 등

장애를 갖고 계신 분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립니다.
장애인연금(200p),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212p), 장애인활동 지원(236p) 등

이 밖에 다양한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 기타 특수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의료운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들
및 그 가족분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해 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함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65만 2,931	281만 4,449	364만 915	446만 7,380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금액	529만 3,845	612만 311	694만 6,776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에 더하여 산정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초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함

〈2017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49만 5,879	84만 4,335	109만 2,274	134만 214	158만 8,154	183만 6,093	208만 4,033
의료급여 (중위소득40%)	66만 1,172	112만 5,780	145만 6,366	178만 6,952	211만 7,538	244만 8,124	277만 8,710
주거급여 (중위소득43%)	71만 760	121만 213	156만 5,593	192만 973	227만 6,353	263만 1,733	298만 7,113
교육급여 (중위소득50%)	82만 6,465	140만 7,225	182만 457	223만 3,690	264만 6,923	306만 155	347만 3,388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23만 3,690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함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함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달 소득금액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85만 2천	155만 9천	232만	265만 6천	270만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170만 5천	311만 8천	464만	531만 2천	540만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255만 7천	467만 7천	696만	796만 8천	810만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2015년 도시근로자 4인가구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원/월)

구분	3인가구 이하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금액	481만 6,665	539만 3,154	547만 5,403





복지는 쉽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복지로에서 한번에! www.bokjiro.go.kr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는 일도, 신청하는 일도
어렵거나 번거롭지 않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면 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회보장정보를 연령별, 상황별로
분류하여 한눈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찾기

▶ 간편검색

연령, 가족특성, 필요한 자원 등 간단한
항목 선택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상세검색

상세정보 입력 또는 본인 확인을 통한
자동 정보제공으로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보다 정확
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서비스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초·중고학생교육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생계지원서비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4만 214원에서 60만원을 뺀 74만 220원 지급 (원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수선비용/수선주기 : (경보수) 350만원/3년, (중보수) 650만원/5년, (대보수) 950만원/7년

- 또한, 자가가구 수급자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해 드립니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memo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200원	-	-	-
중학생	41,200원	54,100원	-	-
고등학생	41,200원	54,1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2회 (분할지급)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그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콜센터(☎129)
- 주거급여 : 콜센터(☎1600-0777)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지원(신청)절차 및 문의처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외 통화료 면제 (월 시내75, 시외75도수)] · 이동전화 기본료 월 15,000원까지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50% 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홈페이지 (www.minwon.go.kr)로 신청 (미래창조과학부 ☎1335)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구원 포함)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단, 감면은 가구당 4인 한도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홈페이지 (www.minwon.go.kr)로 신청 (미래창조과학부 ☎1335)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감면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월 최대 16,000원, 단, 교육 급여대상자 월 최대 10,000원)	한국전력(☎123)
문화활동비	·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요금 면제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별도 신청 없음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센터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 ② 단전 ③ 휴·폐업 ④ 실직 ⑤ 출소 ⑥ 노숙

소득·재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3만 9천원, 4인 기준 335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 지원	115만 7천원(4인기준)	최대 6회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지원	63만 6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3만 4천원 이내(4인기준)	최대 6회
교육 지원	초등학생 21만 9천원, 중학생 34만 8천원, 고등학생 42만 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지원	9만 5천원(10월~3월/월)	최대 6회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단체 등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역량 강화지원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3인 가족 기준 262만 1천원)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회복 및 역량강화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시도), 사망, 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 사건에 직면한 가족

2. 지원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 대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학습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함께하는 저소득 취약가족의 돌봄·가사 지원 등 생활도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도록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4. 문의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1. 지원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지원내용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합니다.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로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주택임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과 일반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23.1~39.6㎡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신청

4.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4인기준 37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36.3~59.4㎡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체(LH, SH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4인기준 37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5년 또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행복주택 공급

1. 지원대상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근로자

* 취업준비생(대학교 등 졸업 2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居前까지 결혼 예정) 포함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인근 대학교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취업준비생	(소득)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본인 총 자산 0.72억원, 자동차미소유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사회초년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 수행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소득)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이하) (자산)본인 총자산 1.99억원, 자동차 0.25억원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 건설지역 또는 연접 지역내에서 소득 있는 업무 수행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예술인, 대학생인 결혼 5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
고령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6년 80% 390만원, 100% 488만원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지원내용

계층별로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 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구분	지원주택규모	주변시세 대비 임대료 수준	최대 거주기간	비고
대학생	전용 16㎡ 이상	68%	6년 (취업준비생 4년)	
사회초년생	전용 16㎡ 이상	72%	6년	
신혼부부	전용 36㎡ 이상	80%	6년~10년	
고령자	전용 16㎡ 이상	76%	20년	
주거급여 수급자	전용 16㎡ 이상	60%	20년	
산단근로자	전용 16㎡ 이상	80%	6년	

3. 지원(신청)절차

입주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임대주택 포털(www.myhome.go.kr)
- LH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 청약신청을 하고 싶는데 언제 청약을 하고 어디서 청약할 수 있나요?
- 인터넷 사이트 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심지역을 등록하시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또한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홈페이지 청약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님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장기전세 주택 임대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20%(4인기준 64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기존주택 매입임대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7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내
 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지원예시 ▶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50㎡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은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

3. 지원(신청)절차

- 기초생활수급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4. 문의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

memo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1. 지원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7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 신혼부부 전세임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7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40만원)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2.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내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8,500만원, 광역시 최대 6,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5,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수준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상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 수도권에서 전세금 8,500만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13만 5천원 수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무상 임대(단, 20세 이후에는 연 2%의 이자를 부담하며, 최장 6년 연장 가능)

3. 지원(신청)절차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NHR를 통해 신청

4. 문의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

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

2. 지원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최초 2년 계약)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처

LH공사(☎1600-1004)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2. 지원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공급물량 범위 내)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처

LH공사(☎1600-1004)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주거환경 개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자금

1. 지원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
- 대학(교)과 동일한 읍·면·동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용자대상 결정통지를 받아 대학생에게 임차(전월세, 하숙 등) 목적으로 당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단, 대학(교) 소재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외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포함할 수 있음)
-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2. 지원내용

세대당 주택신축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구분	주택구분	지원내용
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연립주택	전용면적 75㎡이하(단, 민간업자는 60㎡ 이하)
대출 한도	단독주택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주민이 20세대 미만인 아파트·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포함
	다가구주택	1억 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다세대주택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아파트·연립주택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대출 조건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연2.7% ※ 만 65세 이상 노인주택(노인부양주택포함) 및 대학가 노후하숙집은 연2.0%
	아파트·연립주택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원주민입주자는 연3.0% (공공임대는 2.7%)

3. 지원(신청)절차

(신청인)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에서 사전상담 → (신청인) 시·군·구청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시·군·구청장)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 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하여 우리은행에 대출 신청 → (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우리은행) 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4.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우리은행(☎1588-5000)

memo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2만 973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2. 지원내용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수선비용/수선주기 : (경보수) 350만원/3년, (중보수) 650만원/5년, (대보수) 950만원/7년
-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지원대상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지원내용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을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그린홈)

- 1. 지원대상**
건설한지 15년이 넘는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 2. 지원내용**
세대 내부 환경개선(도배, 전등 교체, 욕실 개선 등), 주민공용시설 개량 및 보수(승강기, 장애인경사로 설치, 외벽도장 등), LED전등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지자체 및 LH공사에서 자체 선정(별도 신청 없음)
- 4.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1. 지원대상**
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주택
* 소외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 2. 지원내용**
LP가스 호스시설 주택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수혜대상자가 방문 및 전화 신청(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4.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재생 에너지 지원

- 1.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 2. 지원내용**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4.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31-260-4114, <http://greenhome.kemco.or.kr>)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 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 1.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2. 지원내용**
백열등, 형광등 등의 일반 조명기기를 효율성 높은 LED 조명기기로 무료 교체해 드립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담당 부서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031-260-4337)

에너지 바우처

1.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40% 이하, 4인기준 178만 6,952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 ※ (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1~6급 등록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 한국에너지재단의 '17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④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7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⑤ '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2.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지원합니다.

- * 실물카드 : 6가지 에너지원 중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
 ** 가상카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수급자의 에너지 이용액을 자동 차감

<가구당 지원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8만 3천원	10만 4천원	11만 6천원

3. 지원(신청)절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접수 → (시·군·구) 선정·결정통지 →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바우처발급·배송 → (전담기관) 사용·정산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17.11월~'18.1월말, (사용기간) '17.12월~'18.4월말

4.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1. 지원대상

저소득,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및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어린이 거주 가구

2. 지원내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을 지원합니다.

- ※ 폼알데하이드, 집먼지진드기 등 환경성질환 유발인자의 농도를 측정·점검 하여, 실내공기질 오염이 심한 가구에 대하여 친환경벽지·장판 교체 등 실내환경을 개선하고,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3. 지원(신청)절차

지자체(시·군·구)에서 해당가구를 선정하여 환경부에 추천

4.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306)

자주 하는 질문

- **한부모가족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환경보건 센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아이와 동행하여 진료 전 과정을 도와 드릴 수 있으며,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할 경우 휴무로 인한 손실비용 일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환경성 질환이란?**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생활환경 속에서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뜻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2. 지원내용

노후 주택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함으로써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해 드립니다.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21)

자주 하는 질문

●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자가가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 시설 개선 등이 가능하므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서도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효율개선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3% 절감 효과(283kWh/m²→217kWh/m²)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주거안정자금 지원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시)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지원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등)을 통해 신청

4.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등)

보금자리론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2. 지원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등)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시)

-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 2. 지원내용**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드립니다.
※ 최대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억 2천만원 이내)
- 3. 지원(신청)절차**
주택도시금융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방문 신청
- 4. 문의처**
 - 주택도시금융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버팀목대출 보증

-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등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 2. 지원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금융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료 연 0.1~0.28%로 신용보증해 드립니다.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주택도시금융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방문 신청
- 4.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주거안정 월세대출 (순수 월세 대출시)

- 1.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아래 우대형 및 일반형에 해당하는 자
 - (우대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 취업 5년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로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2. 지원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대출해드립니다.(총 720만원 한도)
- 3. 지원(신청)절차**
은행(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방문 신청
- 4. 문의처**
 - 주택도시금융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1. 지원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금융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 2. 지원내용**
시중은행에서 주택도시금융의 월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해 드립니다.
※ 매월 최대 27만원씩 2년간 총 648만원 한도
- 3. 지원(신청)절차**
은행(우리·국민·하나·기업·신한·농협) 방문 신청
- 4.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대부

1.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비정규직(일용·단시간·기간제·파견 근로자)은 소득요건 비적용
임금감소 생계비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용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지원내용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총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비	훈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인당 5백만원 (최대 1천만원)	1인당 5백만원 (최대 1천만원)	1천만원	2백만원

3. 지원(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접수 → 예비
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용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용자실행(중소기업은행, www.ibk.co.kr)

4. 문의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1. 지원대상

3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자 또는 전직실업자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자 (연간소득은 부부인 경우 합산,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부대상 제외)

2. 지원내용

월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1인당 지원한도 1,000만원)의
생계비를 저금리(연 1%)로 대출해 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소속기관)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 → (소속기관) 구비 서류 등 대부요건 심사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1회차의 경우) 적격여부 결정 → (소속기관)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 → (대부대상자) 대부적격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 접수

4.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www.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넷(<http://workdream.net>)

memo

미소금융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금융취약계층

- ※ 2인 이상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도 지원
- ※ 지원기준(신용등급)은 '17년 1분기 중 7등급 이하→6등급 이하로 완화 예정

2. 지원내용

- 자영업자대출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7천만원, 무등록사업자 5백만원 이내
-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최대 1천 2백만원까지 대출 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미소금융재단 지점에 신청

4. 문의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memo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ten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 school handwriting practice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햇살론

1.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
- ※ 지원기준(소득요건)은 '17년 2분기 중 3천만원 이하→3천 5백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4천 5백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로 확대 예정

2. 지원내용

사용목적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근로자 햇살론: 생계자금 1천 5백만원, 긴급생계자금 5백만원,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천만원 이내
 - 사업자 햇살론: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천만원 이내
- ※ 근로자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한도는 '17년 2분기 중 1천 5백만원→2천만원으로 확대 예정

3. 지원(신청)절차

- 신청 : 서민금융회사(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전국지점에 신청
- 절차 : 대출상담 → 서류제출 및 대출신청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4. 문의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알려드립니다

◎ **고금리채무 대환자금이란?**

-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바꿔드림론

1.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 신용등급 6~10등급이며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사람
※ 지원기준(소득요건)은 '17년 2분기 중 3천만원 이하→3천 5백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4천 5백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로 확대 예정

2. 지원내용

제도권 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3천만원까지 전환해 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국민행복기금에 신청

4. 문의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memo

새희망홀씨

1.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 지원기준(소득요건)은 '17년 2분기 중 3천만원 이하→3천 5백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4천 5백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로 확대 예정

2. 지원내용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을 연 10.5% 이내의 금리로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대출해드립니다.

※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한도는 '17년 2분기 중 2천 5백만원→3천만원으로 확대 예정

3. 지원(신청)절차

각 은행에 신청

4. 문의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한국이지론(☎1644-1110)

memo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사업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융자)

1. 지원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2.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0.6%, '16.4분기 2.08%)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정책자금을 대출 해드립니다.(5년 이내, 2년 거치)

3. 지원(신청)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신용·담보 등을 통한 대출 실행(금융기관)
※ 필요 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4.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행복 기금 채무조정

1.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2. 지원내용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원금의 30~60%를 감면(특수채무자는 최대 90%)하고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조정해 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국민행복기금에 신청

4. 문의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1.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2. 지원내용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시 30~60%)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4. 문의처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 해소를 지원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1~3급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2. 지원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해 드립니다.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양곡할인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정부양곡을 50~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사랑의 그린PC 보급

1. 지원대상

-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등
- 시설 : 노인회관,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사회복지시설 등
- ※ 보급 후 1년 미만자 재보급 불가

2. 지원내용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를 정비하여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보급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제공

3. 지원(신청)절차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우편 신청
- 사랑의 그린 PC 홈페이지 신청

4. 문의처

- 사랑의 그린 PC 홈페이지(<https://lovepc.nia.or.kr>)
- 사랑의 그린 PC 상담전화(☎1588-2670)

알려드립니다

● 보급되는 PC 사양은 어떻게 되나요?

- 펜티엄Ⅳ급 이상(CPU : 3.0Ghz, RAM 2GB, HDD 200GB, 모니터 LCD 17인치 이상)

●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 신청기간은 시·도에서 매년 초에 신청/접수하고 있으며, 요청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거주지의 시청 또는 도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시도별 담당부서 연락처는 온라인(<https://lovepc.nia.or.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인가증 등 비영리 단체증명서

통합문화 이용권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 지원내용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및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6만원)를 발급해 드립니다.

- 문화예술 : 영화, 도서, 음반, 공연, 전시, 주민센터 문화강좌 등
- 국내 여행 : 숙박업소, 교통, 여행사, 놀이공원, 스키장, 온천 등
- 체육 분야 :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및 국제스포츠경기대회 관람권, 운동용품 등
-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 결제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마켓 이용

3. 지원(신청)절차

- 오프라인 :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신분증 지참) → 7일 이내 수령
-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본인 인증 필요) → 15일 이내 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 또는 자택 우편 수령 → 수령 등록 후 사용

4.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문화누리카드.kr, www.munhwanuricard.kr)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 카드 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콜센터(☎1644-4000, 수령등록 및 분실신고 등)

자주 하는 질문

●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의 주민번호로 실시간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1.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2. 지원내용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등)에서 사용 가능

3. 지원(신청)절차

- 온라인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 → 우리카드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 오프라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우편 신청 → 우리카드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4.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042, 4026)

스포츠강좌 이용권

1.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5~18세 유·청소년)

2.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립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홈페이지(www.svoucher.or.kr) - 이용가능 스포츠시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신청)절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 방문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 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4. 문의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내 '시·군·구 담당자 안내' 참고

자주 하는 질문

●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 매년 12월 전국 동시 접수기간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접수기간인 12월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동시 접수기간' 이후 신청 문외는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안내 문자메세지 또는 홈페이지(MY 페이지 → 이용권신청결과/변경)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정이 안되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신청 가능여부는 시·군·구청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어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디든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등록된 시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등록시설의 '지역별 현황'에서 거주지역으로 조회하시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카드사에서 카드명義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본인확인(개인정보) 후 발급해 드립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건가요?

- 전용 카드발급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시고자 하는 시설 및 강좌를 선택하여 온라인 결제를 완료하시면 시설로 수강료가 직접 입금됩니다.(시설 카드 단말기 결제시 지원 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는 언제 결제해야 하나요?

- 강좌를 수강하시는 해당 월 내에 결제 완료되어야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 해당 월 기간 경과시 지원이 불가하며, 미결제분은 소멸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일 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 자리를 원할 때
- 여성이 일 자리를 원할 때
- 여성이 기업 운영을 원할 때
-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 청년이 일 자리를 원할 때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1. 지원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회사 사정 등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17.4.1 이후 이직자 1일 실업급여 상한액 50,000원으로 인상

3. 지원(신청)절차

- 퇴직 후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 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므로 퇴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 취업훈련

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1. 지원대상

- I 유형 : 만 18~69세 미취업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4인기준 268만원) 이하인 가구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 II 유형 :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층, 만 35~69세의 미취업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기준 446만원) 이하인 중장년층

2. 지원내용

참여자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단계) 진단, 의욕제고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원의 참여수당 지급 - I 유형 : 15~25만원 지급 - II 유형 : 15~20만원 지급
(2단계) 취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00~300만원의 훈련비 지원 (I 유형 : 최대 10% 자부담, II 유형 : 5~50% 자부담)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의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I 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50만원(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30만원, 6개월 근속 시 40만원, 12개월 근속 시 8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신청 → 선정결과 통지 → 프로그램 참여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내일배움 카드제

1. 지원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등

2. 지원내용

-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훈련비의 20~95%(계좌발급일로부터 1년 간 최대 200만원)를 지원하고,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50~95%를 지원하고, I 유형 참여자는 1년 간 300만원 한도로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은 계좌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월 최대 21만 6천원 ~41만 6천원(대상자에 따라 차등지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해 드리며, 훈련 적합성 및 지원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업능력개발 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단위기간(1개월)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훈련수강 중 취·창업한 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 구직등록 및 교육 동영상 시청, 훈련상담 → 자기탐색활동 및 직업훈련정보수집 → 계좌 발급결정 및 개인훈련계획수립 → 내일배움카드발급 및 수강신청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하는 질문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 일자리 마련

저소득층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활근로

1. 지원대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자활근로사업단이란?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단 등과 같이 기술습득을 통해 취·창업이 가능한 사업단으로 전국 248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 지원대상

사업별로 상이하며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2. 지원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3. 지원(신청)절차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4. 문의처

워크넷(www.work.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공산림 가꾸기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인 자로 정기소득이 없는 자
- (신청자격제한) 산림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 (우대요건) 만 55세 이상 장년층 우선 선발,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참여제한조건 : 2년 이상 반복참여자, 고소득자(가구 구성원 재산액 2억원 이상) 및 공적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수령자 참여 제한

2. 지원내용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52,000원(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월 소정 근무시간) 160시간, (근무시기) 약 10개월

3. 지원(신청)절차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접수 및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4. 문의처

- 시·군·구 산림부서 및 국유림관리소
- 산림청(☎1588-3249)

알려드립니다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종류는?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생활권 주변 덩굴제거, 숲가꾸기 산물수집 등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사업 DB 구축 등
- 숲가꾸기패트롤 : 주택 피해목 제거 등 산림 내 긴급민원 처리 등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 목돈마련 및 장려금 지원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희망키움통장 (Ⅰ, Ⅱ)

1. 지원대상

- Ⅰ 유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4인 기준 107만 2,171원) 이상
- Ⅱ 유형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

2. 지원내용

- Ⅰ 유형 :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3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Ⅱ 유형 :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10만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을 지원합니다.
※ 3년 동안 통장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예시 ▶

- Ⅰ 유형 : 본인 저축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월 40만원 → 3년 후 약 1,440만원
- Ⅱ 유형 : 본인 저축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 후 720만원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내일키움 통장

1. 지원대상

신청 당시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에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2. 지원내용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의 1:1), 내일키움장려금(참여사업단 유형에 따라 1:1, 1:0.5, 1:0.3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월 최대 15만원)을 적립해드립니다.

※ 평균 1,368만원, 최대 1,620만원 지원 가능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근로장려금

1. 지원대상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가구로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자(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
* 지원내용 총소득 기준금액 참고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2. 지원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2,500만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23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
총소득 기준금액(*16년 기준)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77만원	185만원	230만원

3. 지원(신청)절차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4.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2. 지원내용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의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5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4.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자주 하는 질문

● 소득 가구에도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여성 경제 활동 촉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임산·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 하였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지원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 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취업장려금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사후관리 지원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3. 지원(신청)절차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고

4.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자주 하는 질문

●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 받은 기업에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급 하고, 인턴 종료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여성이 기업 운영을 원할 때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1. 지원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미만 여성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2. 지원내용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국 16개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 보증금 300만원/실, 관리비 3만원/평/월 (평균)
(비수도권) 보증금 300만원/평, 관리비 1.5만원/평/월 (평균)

• 여성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 지역센터별 창업보육실 현황 : 16센터 205실
(중앙 9, 서울 9, 경기 10, 인천 19, 대전 10, 광주 15, 부산 10, 대구·경북 16, 세종·충남 10, 경남 15, 울산 16, 강원 13, 제주 15, 전북 12, 전남 10, 충북 16)

3. 지원(신청)절차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biz.or.kr)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1. 지원대상

수출 초보 및 유망 여성기업
※ 2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우선선발 대상

2. 지원내용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해외유망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사후 관리 등 수출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무역 실무 교육
- 해외박람회 파견지원 및 바이어 매칭
※ 박람회 부스 및 장치, 참가비, 통역비에 대한 일부 지원(70~80%), 바이어 매칭 비용 일부 지원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3. 지원(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 참가업체 신청·접수(2~11월) → 참가업체 선정 심의(2~11월) → 박람회 참가(3~11월) → 사후지원(7~12월)

4.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34, www.wbiz.or.kr)

memo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1. 지원대상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2. 지원내용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 신청접수 : 연중 수시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조사 : 여성기업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여성 대표자와 면담하여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의 실질적인 참여 여부 확인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통보 → 온라인 확인서 출력 → 사후관리

4. 문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10, www.smpp.go.kr)

memo

여성창업 경진대회

1. 지원대상

사업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 등 우수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2년 미만 여성기업

2. 지원내용

예비여성 창업자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여성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창업을 지원 합니다.

- 시상 및 포상(1,000만원 이내 및 중소기업청장상), 수상자는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 여성 CEO 멘토와 수상자 간의 멘토링 제공으로 성공경험 전수
- 판로개척, 사업전략 등 수상 창업아이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디자인 및 지적재산권 획득, 홍보물제작 마케팅, CI·BI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 지원 실시

3. 지원(신청)절차

- 신청접수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접수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 참가업체 신청·접수(3~5월) → 참가업체 선정(6월) → 선정업체 지원(6~10월) → 사후관리(11~12월)

4.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11, www.wbiz.or.kr)

memo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에게 사회공헌활동과 재취업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1. 지원대상

경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2. 지원내용

업종별로 지정된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을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 신청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사업주) → 지원금 지급 신청(사업주) → 확인, 지원금지급(고용센터)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memo

임금피크제 지원금

1. 지원대상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지원

2. 지원내용

피크임금에 비해 10% 이상 감액된 임금을 연간 1,080만원(분기별 270만원, 월별 90만원) 한도에서 지원

3. 지원(신청)절차

- 신청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임금피크제 합의(사업주, 근로자대표) → 임금피크제 시행 → 지원금신청(근로자) → 확인, 지원금지급(고용센터)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memo

장년고용 지원금

1. 지원대상

만 45세 이상 장년인 미취업자

2. 지원내용

장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9개월간 54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센터) →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매칭(운영기관) → 인턴 약정 체결(참여자-기업) → 인턴 근무 개시(참여자-기업) → 정규직 전환(참여자-기업)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memo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 (예비)창업자

2. 지원내용

퇴직자의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과 창업거점을 지원합니다.

- (기술창업스쿨) 창업자로서 함양해야 할 창업기본(초기성장) 교육과 신산업·성장유망분야 중심 기술교육을 100시간 내외로 운영
- (기술창업센터) 창업을 준비하는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시니어 기술창업을 활성화

3. 지원(신청)절차

- 교육 신청절차 : k-startup 회원가입 →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메뉴 클릭 → 교육신청서 작성 → 교육 신청 승인
- 센터이용 신청절차 : k-startup 회원가입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회원 신청 및 승인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회원카드 발급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이용하기
- ※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현황에 따라 별도의 모집→평가→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4. 문의처

K-스타트업(☎1367, www.k-startup.go.kr)

memo

사회공헌 활동 지원

1.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이며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퇴직전문인력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지원내용

사회공헌활동 일 4시간 이상 참여시 활동비(참여수당, 교통비, 식비)를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지자체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부)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매칭(지자체 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 실시(참여자-기관) → 활동비 지원(지자체 운영기관)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memo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하고자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산업현장교육, 해외취업 및 인턴수료 등의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1. 지원대상

청년취업지원 3개 사업(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참여 청년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2. 지원내용

청년(근로자)이 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자기 부담금 300만원(매월 12.5만원) 적립 시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을 각각 적립하여 1,200만원(+이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 정규직 취업 후 1·6·12·18·24개월, 총 5회 적립

3. 지원(신청)절차

워크넷-청년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 정규직전환(채용), 청년공제 가입 → 공제금 적립(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 만기(2년)지급(2년 근무 시 1,200만원+이자 지급)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년취업 아카데미

1. 지원대상

- 학생 : 대학 재학생(4년제 2~3학년, 2년제 1학년 2학기부터), 졸업 예정자(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 가능자), 졸업자(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 기관 : 기업·사업주단체·대학·민간 훈련기관 등

2. 지원내용

- 학생 :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며, 연수 후 참여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관 : 1인당 교육비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운영기관 20% 자부담)

3. 지원(신청)절차

직업훈련포털 또는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과정 검색 후 해당 운영기관으로 유선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http://myjobacademy.kr>)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2)

memo

해외취업 지원

1. 지원대상

사업명	지원대상
K-Move 스쿨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3,500명)
민간해외취업 지원알선금	합법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하고 연봉 2,400만원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600명)
해외취업성공 장려금	연봉이 1,500만원 이상인 만 34세 이하로 8분위 소득(월6,071,090원) 이하 가구원(2,500명) ※ 단순노무직 배제
해외취업알선	합법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2.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K-Move 스쿨	- 최대 1년간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 - 교육비, 취업지원 등을 포함 1인당 단기 580만원, 장기 800만원 한도 내 지원
민간해외취업 지원알선금	연봉에 따라 직업소개요금 지원(200~300만원)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지원금 우대국가*)취업 1개월 후 200만원, 취업 6개월 후 200만원 지원 (그 외 국가)취업 1개월 후 100만원, 취업 6개월 후 100만원 지원 * 지원금 우대국가: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선진국 분류 26개국을 제외한 국가)
해외취업알선	- 해외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 ※ 서울 K-Move 센터, 부산 K-Move 센터

3. 지원(신청)절차

사업명	지원(신청)절차
K-Move 스쿨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이력서 작성, 저장 및 공개 설정) → 지원 내용 선택(희망 연수과정 선택) → 지원방법(지원하기 클릭)
민간해외취업 지원알선금	참가기관 모집(참가기관 신청서 제출) → 구인등록 및 구직자 모집 → 취업알선 실시 및 사업모니터링 → 취업알선지원금 청구(지원금 청구 및 취업 증빙서류 제출)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해외취업성공 장려금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회원가입(구직 회원 등록) → 취업성공(취업인정기준 부합) → 1차 장려금 신청(취업기간 1개월 후) → 3차 장려금 신청(동일기업에서 취업기간 6개월 후)
해외취업알선	구직자 구직등록/구인요청(구인신청서) 접수 (www.worldjob.or.kr) → 재외공관에 구인요청 사실 확인(취업비자 적법성, 업체진위여부 등) → 구직자 모집/선발 → 알선 → 서류심사, 면접, 합격 결정 → 근로계약 체결 → 비자발급 등 출국 지원

4.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9997

일학습 병행제

1. 지원대상

- 기업 :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술 기업
- 학습근로자 : 취업희망자(학력 관계 없음)

2. 지원내용

참여 기업에게 현장훈련 교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교육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현장훈련비용, 기업현장교사 및 행정 전담자 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 기업 :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신청(수시)
-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에 신청
* 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계획은 HRD-Net(www.hrd.go.kr)을 통해 확인

4.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1. 지원대상

15세 이상의 구직신청자 중 미취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 비진학 예정의 고3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 등

2. 지원내용

고용센터 상담 결과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 전액과 훈련장려금(월 최대 41만 6천원, 대상별 출석일수별 차등 지급)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고용센터 방문 → 구직신청 및 상담 → 지원 결정 → 훈련신청 및 훈련수강 → 비용지원

4. 문의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취업사관 학교

1. 지원대상

만 15~24세 미만의 학교 밖 위기청소년

2. 지원내용

학업중단, 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 훈련생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직업 훈련 무료 지원

3. 지원(신청)절차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www.hrdkorea.or.kr)

memo

임신·보육·교육 지원서비스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지요?

-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지원대상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2. 지원내용

소득기준 (중위소득)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신선배아(3회 or 4회)	동결배아(3회)
의료급여 수급자	50만원	300만원(4회)	100만원
130% 이하	50만원	240만원(4회)	80만원
130% 초과 ~ 200% 이하	50만원	190만원(3회)	60만원
200% 초과 ~	20만원	100만원(3회)	30만원

알려드립니다

●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상담실
-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 대면상담 : 인구보건복지협회 3층 희망상담실
(영등포구소재, 심리상담에 한함)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1. 지원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2. 지원내용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에 이르기까지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 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수첩을 배부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수첩에 수록된 임신주수별 산전관리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수첩내용은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 도모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담당진료 의사의 판단하에 개인별 산전관리 검사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1.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2. 지원내용

-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영양 플러스

1.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기준 357만 4천원) 미만인 가구의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굴/오렌지 주스 등의 영양보충 식품을 제공합니다.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인 경우에는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1.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는 경우 최대 50만원(다태아인 경우 90만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를 통해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1. 지원대상

임신헌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

-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 지정요양기관(산부인과 및 한방 병·의원, 조산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드립니다.
※ 카드수령(포인트생성일)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
-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임신부 90만원)
 - 분만 취약지(34곳) 지원기준 충족자의 경우, 기본 지원 금액 이외 20만원 추가 지원

3. 지원(신청)절차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가능 은행에 방문 신청
- 산부인과에서 직접 공단에 임신 사실 등록 시 카드사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보건복지콜센터(☎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 출산 후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공단 및 위탁금융사에 제출해야 하며, 분만 및 유산 후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1.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의 산모
- 2.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최대 120만원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드립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4번)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빌딩 15층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비용 지원

- 1. 지원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복지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 2.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아이 1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여성장애인(1~6급)	아이 1명당 100만원
-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요양비 (출산비) 지원

- 1. 지원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2. 지원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1. 지원대상**
2008.1.1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2. 지원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 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추가된 가입기간만큼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자녀 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 3. 지원(신청)절차**
자녀 출생 시점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를 제출
- 4.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4인기준 직장 110,177원, 지역
122,696원)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2.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해 드립니다.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단 5일~최장
25일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임신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아기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1. 지원대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고려하는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입양숙려기간)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

알려드립니다

●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일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급합니다.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비용 지원(1주)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35만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원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4인기준 804만원)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질환기준 : 임신 20주 이후에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2.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고위험 임산부 본인,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3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으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질병코드 및 수술명)받고, 입원치료 받아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 코드 및 수술명	•O60.0, O60.1, O60.2, 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O11, O14, O15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직장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원

1.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대 90일간(쌍둥이의 경우 120일간)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고,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자주 하는 질문

● 출산전후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지원내용

- 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40% 내에서 급여를 지급(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하고, 급여 중 일부(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

-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씨
- 매월 80만원(200만원X4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20만원(80만원X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60만원입니다.
 - 박엄마씨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휴직기간에는 매월 60만원씩 총 720만원(60만원x12개월)을 받고,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240만원(20만원x12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지원(신청)절차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알려드립니다

●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지원대상

육아를 위해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2. 지원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 (근로자)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비정규직 재고용)

1. 지원대상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근로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은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최대 1년간)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

1. 지원대상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 육아휴직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대기업은 해당 없음)을 지원하며,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를 10만원(1회) 추가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대기업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알려드립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 (기존) 육아휴직 등 지원금의 50%는 복귀 1개월 후 지급, 나머지 50%는 6개월 계속 고용시 지급
- (개선) 육아휴직 등 시작 1개월 후 1개월치 지급, 나머지 (최대 11개월)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시 지급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기업은 월 30만원)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 지원대상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 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설치비	무상 지원	시설설치비	단독 3억원 공동 6억원 산단형 15억원 컨소시엄 6억원	- 시설전환비용의 60~8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장애아 시설 80%)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비용의 90%, 매입비용의 40% 지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시설전환비용의 90%, 매입비용의 40% 지원 - 교재교구는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교재교구비	5천만원	
	용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공동 9억원)	- 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 이율: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용자대상에서 제외
운영비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월 60만원 (중소기업 월 12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 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부터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중소 기업 지원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규모별 월 200~ 520만원	- 39명 이하: 200만원 - 40명~59명 이하: 280만원 - 60명~79명 이하: 360만원 - 80명~99명 이하: 440만원 - 100인 이상: 520만원

3. 지원(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5,
부산 ☎051-320-8182~7, 대전 ☎042-870-9111~6)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아이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2.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원~43만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어린이집 (보육료)	43만원 (종일반)	37만8천원 (종일반)	31만3천원 (종일반)	22만원	22만원	22만원
	34만4천원 (맞춤반)	30만2천원 (맞춤반)	25만원 (맞춤반)			

-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 어린이집(보육료)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유아학비)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 '16.7월 만0~2세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라 종일반(7:30-19:30), 맞춤반(9:00-15:00) 구분
- ※ 맞춤반 월 15시간(6만원) 긴급보육바우처 제공

3. 지원(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자주 하는 질문

● 보육서비스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

-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만 5세) 2011. 1. 1. ~ 2011. 12. 31.
- (만 4세) 2012. 1. 1. ~ 2012. 12. 31.
- (만 3세) 2013. 1. 1. ~ 2014. 2. 28.

※ 취학대상 아동('10.1.1.~'10.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보육료) 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2만원
- (방과후과정비) 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원
-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16년 기준)

〈유의사항〉

- ▶ 지원기간: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중복지원 불가: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 소급지원 불가: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

3. 지원(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보건복지콜센터(☎129)
- 유아학비: 에듀콜센터(☎1544-0079)

가정양육 수당 지원

1. 지원대상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전 84개월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연령 (개월)	양육 수당	연령 (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 (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 7천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 6천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원	36~47개월	12만 9천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원		

3. 지원(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

- 15일 이전 신청시 신청일부터 변경신청한 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서비스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 지원

●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은?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 하여 지원하며,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월부터 지원하며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1. 지원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교)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유형	소득 기준	시간제(시간당 6,500원)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0~2세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인기준 268만원)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91만원	39만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4인기준 379만 7천원)	2,925원	3,575원	-	6,500원	65만원	65만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4인기준 536만 1천원)	1,625원	4,875원	-	6,500원	39만원	91만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6,500원	-	6,500원	-	130만원

* A형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주민센터(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대표번호 ☎1577-2514)

자주 하는 질문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 1. 지원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 2.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 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시간연장보육(19:30~24:00, 유아학비 대상아동도 지원가능), 야간보육(19:30~익일 07:30), 24시간보육(07:30~익일 07:30), 휴일보육(공휴일)
※ 맞춤형 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 3. 지원(신청)절차**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시간제 보육 지원

- 1.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 2. 지원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시간당 보육료 : 기본형 2,000원, 맞춤형 : 1,000원)
- 3. 지원(신청)절차**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시간제보육기관에 아동 등록 후 아이사랑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를 이용하여 예약
※ 맞춤형 서비스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기본형 지원
- 4. 문의처**
 -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자주 하는 질문

-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은?**
- 월~금 9:00~18:00 동안 이용가능하며, 기본형은 월 40시간, 맞춤형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입양아동 지원

-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 2. 지원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6세 미만 아동 월 15만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월 62만 7천원 (경증) 월 55만 1천원
	의료비 최대 연 260만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 참고(161p)

-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육아종합 지원센터

- 1. 지원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 2. 지원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도서·장난감 대여,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육아상담 및 교육, 부모간 육아정보 교류 등을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 4. 문의처**
 -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조)부모 및 자녀)

2. 지원내용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공동육아나눔터) 제공
-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 나눔 기회 제공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 상시 프로그램(동화구연 등) 운영 및 지원
-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활동 운영 지원(전체 모임 및 소모임 등)
- * 등하교동행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놀이품앗이, 학습품앗이, 예체능 취미활동품앗이 등
- 품앗이 리더 양성교육 지원 등

3. 지원(신청)절차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4. 문의처

-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지역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알려드립니다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

- 여성가족부가 2011년부터 핵가족화로 인해 약해진 가족 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를 통해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공동육아나눔터는 ?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 및 프로그램 등을 마음껏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한 자녀돌봄 놀이공간입니다.

● 가족품앗이 활동은 ?

-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여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재능기부 등)을 살려, 학습·체험·등하교 활동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오감 및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합니다.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 지원대상

- 검사 : 전 신생아
- 환아관리 :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된 만 18세 미만 아동

2.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6종*)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환아의 정밀검사비용을 지급하고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을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

2. 지원내용

청각선별검사비(AOAE 10,000원, AABR 27,000원)를 지급하고, 검사결과 재검으로 판정될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지원내용

- 미숙아의 입원치료비를 5백만원~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영양플러스

1.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4인기준 357만 4천원) 미만인
가구의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굴/오렌지주스 등의 영양보충 식품을 제공합니다.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4인기준 178만원) 이하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에게 지원

2. 지원내용

기저귀(월 6만 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영아의 부모·주양육자·사회복지시설장·위탁모 등이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일까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만 12세 이하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 일부 백신의 경우 지원연령이 다름

2. 지원내용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아래 16종의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항목	국가예방접종 목록
1	BCG(피내용)
2	B형간염
3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4	IPV(폴리오)
5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6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7	수두
8	일본뇌염(생백신)
9	일본뇌염(사백신)
10	Td(파상풍/디프테리아)
11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12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3	PCV(폐렴구균)
14	A형간염
15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16	인플루엔자

3. 지원(신청)절차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방문
※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9, 6852)

영유아 건강검진

1.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건강검진(7회), 구강검진(3회) 비용 전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1차) 4-6 개월	(2차) 9-12 개월	(3차) 18-24 개월	(4차) 30-36 개월	(5차) 42-48 개월	(6차) 54-60 개월	(7차) 66-71 개월
건강 검진	○	○	○	○	○	○	○
구강 검진	-	-	○	-	○	○	-

※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30%)에게는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
되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3. 지원(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영유아 가정에
발송하고, 영유아 가정은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음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

만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아동

2. 지원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10%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6세 미만 아동
※ 만 6세 이상은 20%

3. 지원(신청) 절차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 검진)

1. 지원대상
만 3~6세 아동
2. 지원내용
 - 어린이집 아동 등에게 시력검진 및 눈 보건교육을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아동의 눈수술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취학전 아동 단체 불소 도포

1.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2. 지원내용
아동들의 충치 예방을 위해 치아에 불소제제를 덮어씌우고, 구강 보건 교육을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지역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 드립니다.

초등 돌봄교실

1. 지원대상
 - 오후돌봄 (방과후~17:00)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1~2학년 학생
 - 3학년 이상은 1~2학년 학생 수용 후 학교 여건에 따라 수용
※ 3~6학년의 경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서 돌봄 수요 충족
 - 저녁돌봄 (17:00~22:00)
 -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 3학년 이상은 전년도에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들 학교 여건에 따라 수용
2. 지원내용
 - 오후돌봄 : 저학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및 예체능 활동,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및 간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휴식, 숙제, 독서 등 개인활동
 - 저녁돌봄 : 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및 급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급·간식비는 학부모 부담(단, 교육복지원 대상학생은 무료)
3. 지원(신청)절차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이용 또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www.neis.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처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초등학교

지역아동 센터 지원

1. 지원대상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중위소득100%(4인 기준 447만원) 이하)

2. 지원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5일, 1일 8시간 이상(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

3. 지원(신청)절차

지역아동센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학교로 돌봄서비스 신청
→ (시·군·구) 접수/돌봄필요여부 등 자격확인/서비스 제공 결정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제공 → (시·군·구) 사후관리 또는 확인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8만 428원) 이하 저소득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 3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4학년~ 중학 3학년 청소년

2. 지원내용

일일 4시간, 주 6일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체험활동(주중 주 4시간, 주말 월 1회 5시간)
- 학습지원활동(보충학습 주 5시간, 교과학습 주 4시간)
- 자기계발(2시간 이상 의무), 특별지원(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또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시설(지역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방문 및 유선 신청

4. 문의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www.youth.go.kr)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02-330-2831~34)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고교학비 지원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상이함

2.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처

교육부(☎1544-9654)

자주 하는 질문

● 교육비 지원(고교학비, 방과후, 급식비, 교육정보화)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저소득 수급자격 기준) 학생 또는 가구원 중 1인 이상 다음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시도교육청별 항목별로 다르나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상이함

2. 지원내용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처

교육부(☎1544-9654)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통신비)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상이함

2. 지원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지원)을 지원합니다.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간 중복지원 배제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처

교육부(☎1544-9654)

급식비 지원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상이함

2. 지원내용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합니다.(무상급식 지역 제외)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처

교육부(☎1544-9654)

memo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23만원) 이하인 가구의 자녀

2. 지원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200원	-	-	-
중학생	41,200원	54,100원	-	-
고등학생	41,200원	54,1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2회 (분할지급)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할 수도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 장학금 지원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1.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I 유형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국가장학금 II 유형 : II 유형에 참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교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1~4학년 대학생(단, '98.1.1 이후 출생자, '14년 이후 입학자, 미혼에 한함)
- ※ I 유형 및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은 성적(B⁺ 이상) 및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충족 필요

2. 지원내용

- I 유형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합니다.

〈2017년 소득분위별 연간 지급금액〉 (단위 : 만원)

소득분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지급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 II 유형 :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기초~2분위는 연간 520만원 지원, '17년 기준임)

3. 지원(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알려드립니다

● 소득분위란?

- 소득수준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해 신청학생 가구의 재산, 소득 등을 조사하여 10개의 구간(기초~10분위)으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교육 근로장학금

1.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I 유형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국가장학금 II 유형 : II 유형에 참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교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1~4학년 대학생(단, '98.1.1 이후 출생자, '14년 이후 입학자, 미혼에 한함)
※ I 유형 및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은 성적(B⁺ 이상) 및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충족 필요

2. 지원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단가 : 교내근로 8,000원, 교외근로 9,500원
- 주당 근로시간 : 학기 중 20시간(단, 방학 중 40시간 가능), 학기당 최대 450시간 이내
※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형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 까지 가능
※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3. 지원(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www.kosaf.go.kr

알려드립니다

● '15학년도부터 장학생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소득분위를 변경*하였으며 우선순위 1순위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 * 소득분위 : (기존) 7분위 → (변경) 8분위
- ** 우선순위 : (기존) 1순위 ~ 소득 3분위까지 → (조정) 1순위~소득 4분위까지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1. 지원대상

-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자 중 해외대학 입학에 희망하는 저소득층(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
- '19년 2월 또는 '20년 2월 졸업 예정자
- 소속 고등학교가 속한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자
- 전체학기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전공실기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학점 A 이상인 과목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고3)/12단위(고2) 이상

2. 지원내용

구분	내용
유학준비생 (국내장학생)	• 지원대상 :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지원내역 : 학업장려비 지원(고등2학년 : 월 50만 원, 고등3학년 : 70만 원) - 진학 및 학업 관리비 : 시험 응시료, 원서지원비 등 • 지원기간 : 선발 익월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지원 • 지급절차 : 서류준비 → 장학금신청 및 서류제출 → 학생계좌로 개별입금
유학생 (해외장학생)	• 선발기준 : 유학준비생 장학생 중 해외대학 진학자를 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학생 유형으로 전환여부 결정 • 지원내역 : 연간 최대 5만 USD(학비+체재비), 항공료 별도 - 학비 : 대학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학교시설 이용료 등 - 체재비 :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참고) ※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학비+체재비가 5만 USD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최대 1만 USD 범위에서 추가 지원가능 - 항공료 : 연간 최대 2,500USD 이내에서 매년 왕복 1회 또는 편도 2회 항공료 실비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3. 지원(신청)절차

교육청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www.kosaf.go.kr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1. 지원대상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학과(부) 3학년 재학생

2. 지원내용

- 등록금 : 장학생 선발 학기부터 2년간 매학기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계속지원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87점/100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충족 시 계속 지원)
- 생활비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학기당 1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 시설 수급자
- 학업장려비 : 일정한 조건에 따라 학업장려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연간 150만원)

3. 지원(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www.kosaf.go.kr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 지원대상

- 신입생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 포함)한 우수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된 학생
- 재학중 우수자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된 학생

2.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금액 : 학기당 180만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지원기간 : 장학생 선정 후 최대 4년(정규 8학기)*까지 지원(매학기 일정 성적** 충족 시 계속 지급)
* 3학년 선발자는 최대 2년(정규 4학기)까지 지원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100점 만점 중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3. 지원(신청)절차

대학이 선발한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

인문100년 장학금

1. 지원대상

인문학에 대한 학생의 학업의지와 대학의 인재육성계획을 반영하여 '전공탐색유형'과 '전공확립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상 선발

- 전공탐색유형
 - 선발대상 : 인문사회계열 진학 예정인 국내 고교 3학년 및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
 - 선발방법 : (고교 3학년) 교육청 추천자에 대해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인문사회계열 분야에서의 성장가능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발, (대학1학년) 대학별 인재육성계획에 따라 대학 자체선발
 - 석·박사 진학 장려 : 인문사회계열 대학원 진학시 장학금 지원방안 검토(예정)
- 전공확립유형
 - 선발대상 :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재학 중인 3학년
 - 선발방법 : 대학별 인재육성계획에 따라 대학 자체선발
 - 석·박사 진학 장려 : 인문사회계열 대학원 진학시 장학금 지원방안 검토(예정)

2. 지원내용

- 전공탐색유형 : 대학 1~4학년 등록금, 생활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학기당 180만원), 학업장려비(학기당300만원, 대학 50% 대응투자시)를 지원합니다.
- 전공확립유형 : 대학 3~4학년 등록금, 생활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학기당 180만원), 학업장려비(학기당300만원, 대학 50% 대응투자시)를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www.kosaf.go.kr

알려드립니다

- '15학년도부터 국가우수장학금 인문사회계 장학금이 '인문 100년장학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고교단계부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여 진학을 유도하고 학사부터 박사과정까지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이 재구성되었습니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 학자금 대출 지원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 지원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이며,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 재취업을 희망하는 장년층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득 8분위 이하이며, 만 45세 이하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학부생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재직자에 한해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2. 지원내용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원 한도(학기당 150만원) 내에서 대출금리 연 2.5%로 대출해 드립니다.

※ 소득분위 3분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3. 지원(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1.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학부생, 대학원생(소득분위 무관)
 -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소득분위 이외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충족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제도(일반/취업후) 선택 가능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만 55세 이전 등록 및 재학 이력이 있어야 하며, 만 56세 이상 신입생은 대출 불가)
-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2. 지원내용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200만원 한도(학기당 100만원) 내에서 대출금리 연 2.5%로 대출해 드립니다.

- ※ 단,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 대학(전문대 포함) : 4천만원
 -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 의·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3. 지원(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구분	지원대상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 (학부모가 농어촌 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상기 1순위 외의 농어촌지역 거주자(가구소득 8분위 이하)
3순위	• 특별추천자

2. 지원내용

당해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드립니다.
※ 졸업 후 2년 이후 1학기 분을 1년 이내 월별 균등 분할 상환

3. 지원(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

자주 하는 질문

- **농촌학자금융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이제한이 있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 나이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이면 됩니다.
- **농촌학자금융자는 생활비 대출은 없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대출로만 이용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 급식 및 교육복지

급식, 정보화, 학습,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학교 우유급식

1.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의 초·중·고학생
※ 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장애연금·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초·중학생 포함
-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지자체장과 교육기관장이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2. 지원내용

학생들에게 학기중·방학중 우유를 지원합니다.(연간 250일 내외, 430원/200ml)

3. 지원(신청)절차

소속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서를 학생에게 배부시 학생은 우유급식 참여 신청서를 제출

4. 문의처

소속 학교

아동급식 지원 (지방이양사업)

1.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 중 가정환경상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지자체의 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2. 지원내용

지역사회 급식제공 여건, 가구의 취사능력 등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단체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식품권 제공 등으로 급식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급식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 급식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4.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 지원대상

교육급여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2. 지원내용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재학 중인 학교 및 교육청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소속학교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학대 피해를 받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 지원대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및 그 가족

2. 지원내용

- 실종아동 등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경찰청과 협력체계 구축)
-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무연고 아동 등의 신상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를 활용합니다.
-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

memo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2. 지원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피해아동심터를 통해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합니다.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3. 신고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또는 스마트폰 앱 “아이디킴콜112”
-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60개소)*에 문의·상담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참조

자주 하는 질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교사직군(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등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 신고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 학대피해의심아동과 학대행위의심자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 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가정위탁 아동 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른 가정에 맡긴 경우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2. 지원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월 15만원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4만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원
상해보험료	연 6만 5천원

3. 지원(신청)절차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아동발달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세, 만 13세 가입 가능

2.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통장에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드립니다.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4만원까지 가능

3. 지원(신청)절차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디딤씨앗지원단(☎02-790-0786, www.adoncds.or.kr)

드림스타트

1.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2.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 환경·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 체험, 양육지원 등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98.1.1~'05.12.31)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 방과후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청소년
-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2. 지원내용

3개월분 생리대(소형·중형·대형 각 36개)를 일괄로 지급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위기상황에 처해있거나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주거, 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국립중앙 청소년 디딤센터) 운영

1. 지원대상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세~18세)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

2. 지원내용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과정(4박5일)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 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를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교육청, 학교, Wee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해 신청

※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압·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4. 문의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031-333-1740)

자주 하는 질문

● 참가비용은 얼마나 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일반가정은 월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기과정(4박5일)에 참가하는 청소년은 참가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1. 지원대상

위기 청소년(청소년기본법상 9~24세)

※ 우선지원대상 : 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비행, 인터넷 중독, 폭력(성·학교·가정)피해, 학업중단 청소년 등

2. 지원내용

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후 청소년의 문제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청소년상담전화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상담

4. 문의처

청소년전화(☎1388)

memo

청소년
특별지원

1. 지원대상

- 다른 제도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4인기준 321만원) 이하
 - ※ 단, 생활·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8만원) 이하

2.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및 서비스 지원	연 200만원 내외 (220만원 한도)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 함양 등 자립함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소송비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연 350만원 이내
청소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	월 10만원 이내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3. 지원(신청)절차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청소년전화(☎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 지원대상

-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구분	내용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의 상담
교육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의 복교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검정고시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진로교육활동, 직업체험, 경제활동 참여 등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기타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지역특성화프로그램 등

3. 지원(신청)절차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www.kdream.or.kr)
- 청소년전화(☎1388)

청소년 성문화센터

1.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2. 지원내용

- 대상별, 연령별 전문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 유치원,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02-3144-1223)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1.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청소년

2. 지원내용

-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에서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등 숙박교육 후 1년간 사례관리를 통해 성매매 재유입 예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 기본과정으로 청소년 성장캠프 40시간 및 심화과정으로 희망기움 과정 20시간 교육과정 지원
- 성장 캠프 전·후에도 심리적지지,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전·사후지원

3. 지원(신청)절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

1.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

2. 지원내용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 중1, 고1)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를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치유 등을 지원합니다.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및 치유평화프로그램 운영(인터넷치유 캠프(11박 12일), 가족치유캠프(2박 3일) 등)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일반청소년 최대 3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23만 3,690원) 이하 취약 계층 최대 50만원) 지원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상설인터넷치유전담시설)에서 1~4주 과정 치유프로그램 상시 운영

3. 지원(신청)절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진단 평가후 중독단계별 지원

4. 문의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91~5)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상담지원

1. 지원대상

학생 및 학부모

2. 지원내용

학교폭력, 교우관계 등 개인, 가정, 사회 요인에 의한 학교적응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적응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합니다.

구분	내용
Wee클래스 (학교)	잠재적 위기학생에 대한 개인상담/집단상담/교육프로그램/심리검사/자문 수행
Wee센터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학생 및 상담희망 학생에 대해 진단·상담·치유 원스톱서비스, 심층심리검사, 정서행동특성검사 후속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서비스 제공
Wee스쿨 (시·도 교육청)	장기위탁교육, 고위기 학생의 장기간 치유 및 교육, 교과활동, 직업진로교육, 방과후 활동, 상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가정형 Wee센터 (시·도 교육청)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돌봄(주거)·상담·교육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3. 지원(신청)절차

- Wee클래스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Wee센터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학교장 추천
- Wee스쿨 : 학교장 추천
- 가정형 Wee센터 : 학교장 추천

4. 문의처

- Wee홈페이지(www.wee.go.kr)
- Wee 프로젝트 특임센터(☎043-530-9182, 9184)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_Net)

1. 지원대상

9~24세 위기 청소년 및 가족

2. 지원내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 협력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지원(신청)절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4. 문의처

청소년전화(☎1388)

청소년전화 1388

1. 지원대상

청소년(만 9~24세), 부모 및 가족

2. 지원내용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상담부터 가족갈등, 교우관계 문제,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진로 및 학업 문제 등을 경험하는 청소년 및 가족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전화상담 : ☎1388 또는 지역번호+1388로 전화
- 문자상담 : #1388번으로 문자상담
- 카카오톡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1388과 친구맺기 후 상담 실시
- 사이버(인터넷 채팅) 상담 : www.cyber1388.kr에 접속해서 채팅방 참여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 지원대상

부모 이혼 등의 가족해체,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비행·범죄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출하여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2. 지원내용

의·식·주 등 생활보호에서부터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진로탐색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검정고시, 학업복귀 지원 등 개별 가출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 또는 청소년쉼터에 전화, 방문 신청

4. 문의처

청소년전화(☎1388, www.cyber1388.kr)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쉼터에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최소 7일 이내부터 최장 3년까지(필요시에는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머물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입소 기간	24시간 ~ 7일 이내	3개월 이내 ※ 3개월씩 2회 연장가능 (최장 9월)	3년 이내 ※자립지원관이 없는 시도의 경우 필요시 1년 단위 지속 연장가능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사업

1. 지원대상

2009년 이전에 설치된 전국 실내외 놀이터 및 활동공간(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2. 지원내용

진단을 희망하는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무상으로 환경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한 문제점별 개선방안을 제공 합니다.

항목	진단내용
사용재료	표면의 부식 또는 노화 상태 점검
도로 또는 마감재료	유해중금속 측정, 방출오염물질
목재	목재방부제 함유 여부 측정
모래 등 토양	유해중금속 측정
합성고무 바닥재	유해중금속 측정
시설 및 바닥재	모래 등 토양 내 기생충(란) 확인 및 기타 위생관리 점검

3. 지원(신청)절차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혹은 관리주체가 환경안전진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접수

4. 문의처

- 환경안전진단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
- 환경안전진단 콜센터(☎1800-0490)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류,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1. 지원대상

만 15~24세 대한민국 청소년

2. 지원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국가간 청소년 교류	• 참가자격 : 만 16~24세 청소년 • 운영기간 : 연중 • 모집인원 : 5~40명(국가별 상이) • 모집시기 : 3월, 6월 중 • 참가비용 : 왕복항공료의 80% ※ 소외계층은 참가비 전액지원 • 주요내용 : 청소년 관련 기관방문, 청소년 교류활동, 문화체험 및 탐방 • 교류국가 : 연간 20여개국
청소년 해외자원 봉사단	• 참가자격 : 만 15~20세 청소년 • 파견시기 : 7~8월 중 • 파견규모 : 140여명 • 모집시기 : 4월 • 참가비용 : 1인당 64만원 이하(국가별 상이) ※ 취약계층은 전액지원 • 주요내용 : 개발도상국 아동·청소년·지역주민을 위한 노력봉사, 교육봉사 중심의 활동과 문화체험
국제회의· 행사 참가단	• 참가자격 : 만 16~24세 청소년 • 파견기간 : 10일 내외 • 모집인원 : 20여명 • 모집시기 : 연중 • 참가비용 : 왕복항공료의 30%, 참가비, 체재비 및 활동비 ※ 소외계층은 참가비 전액지원 • 주요내용 : 타국가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행사 참여

3. 지원(신청)절차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홈페이지(<http://iye.yout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모집공고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4. 문의처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02-330-2892, 2896, 2898

자주 하는 질문

● 국제교류에 참여하고 싶어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참가자 선발기준은 공통적으로 참가신청서, 자기소개서, 참가활동 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지원 동기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특기, 단체활동 참여의 적극성 등을 고려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참가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등의 소외계층 청소년을 전체 인원의 20% 이상 선발하고 있습니다.

memo

청소년활동 지원

1. 지원대상

대한민국 청소년 및 법인·시설·단체

2. 지원내용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 지원 : 지자체 심사를 통하여 선정
-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청소년 시설, 단체 등 법인 선정

4. 문의처

- 각 지자체 청소년활동지원 부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00

memo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1. 지원대상

일반·소외 청소년, 학교 단체 당일 체험 및 일반단체 시설 이용

2. 지원내용

사업과제	주요내용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소년활동 정책과 사회적 변화, 청소년 활동 요구조사 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발굴 포함)하고 현장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보급
지역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	• 지역 내 청소년지도자의 직무역량 개발 지원을 위하여 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의 청소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역량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 지역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지원 하면서 지역 내 청소년기관이 효과적으로 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청소년 활동 정보 제공	• 청소년 및 관계자의 수요와 특성에 적합한 청소년 활동 정보를 수집하여 상시적으로 제공
청소년활동 신고 지원	• 청소년 수련활동 사전신고 제도 안내 및 컨설팅 • 신고 수리된 활동 정보에 관한 안내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보 안내
지역 유관기관 연계 협력	•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청소년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공동협력 사업 등 운영
지역특성화 사업	•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 브랜드 사업으로 지역연계를 기반으로 함

3. 지원(신청)절차

17개 시·도 및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17개)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도	소재지	문의처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02-849-0404~5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051-852-3461~2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053-659-6210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032-833-8057~9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062-234-0755~6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042-488-0732~3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052-227-0606~7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031-232-9383~5
강원	강원도 원주시(분소 : 강릉시)	☎033-731-3704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043-220-6821~2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041-554-2000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063-232-0479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061-280-9002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054-850-1004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055-711-138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64-751-5041~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마은로	☎044-864-7935

알려드립니다

●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이란?

- 17개 시·도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지역 청소년 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지역중심 청소년활동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중앙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활동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국내로 이주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북한이탈, 중도입국청소년 등

2. 지원내용

구분	내용
맞춤형 정보서비스	-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 정착, 교육, 취업 진로, 생활 전반의 정보 안내 - Rainbow School 등 활동프로그램, 통합상담·사례관리 연계 및 기관연계 지원
입국초기 지원교육 (Rainbow School)	2016년 15개 지역, 23개소에서 운영 -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및 특기적성, 사회문화, 심리프로그램 지원 - 전일제, 겨울학교, 여름학교, 주말·야간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청소년 초기 적응을 위한 비교문화체험 및 동기모임 실시
진로지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2016년 전국 12개소 운영 - 진로지원이 필요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및 설계, 직업훈련 10대 후반~20대 초반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통합상담 및 가족연계 프로그램	- 온·오프라인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실시 - 개인·집단 맞춤형 상담 및 통번역 상담 실시 - 이주배경청소년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 내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가족캠프
역량강화 프로그램	-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지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통·통” 통합캠프 실시

3. 지원(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프로그램 연계 등 서비스 지원 → 사례관리

4. 문의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02-722-2585,
www.rainbowyouth.or.kr)

memo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을 때
-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 건강보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여 가정경제를 보호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제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당뇨병자, 선천성신경인성방광환자 등의 소모성 치료재료비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168p)
임산·출산 진료비	임산·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90만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신부 20만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93p)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지원(신청)절차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가 과도하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23만 3,690원) 이하 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드립니다.

대상	지원내용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1.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매월 1회 지원합니다.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고혈압, 당뇨병 지속치료를 향상을 위해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맞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육 서비스 :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등록·관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작성 후 참여 가능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043-719-7409, 7433)

자주 하는 질문

● 어느 병원·약국에서 가능한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방문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 병원을 처음 방문하실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제도

1. 지원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 외상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결핵질환자

2.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해 드립니다.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 암,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memo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1. 지원대상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중증화상 질환으로 인해 입원 중인 환자로서 저소득 계층(차상위포함)
- (본인부담금 100만원이 넘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200만원이 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57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100%(4인 기준 357~447만원)인 본인부담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30% 이상인 가구 중 심의를 통해 지원

2. 지원내용

최대 2천만원까지 본인부담 의료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제도

1.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대 상 자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기초생활 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사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의료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천원~2천원, (2종)입원 10%, 외래 1천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합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시 25만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 제도 참조(168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 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원을 가상계좌로 지급(다태아인 경우 9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 금액 지급

3. 지원(신청)절차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을 우선 이용하여야 하며, 병원 등 이용 필요시에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아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상한제

1. 지원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내용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과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구 분	본인부담금 보상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1종 수급자	매30일간 2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환급	매30일간 5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2종 수급자	매30일간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환급	매6개월간 6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3. 지원(신청)절차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유선, 우편, FAX 등)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 지원대상

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행려한자,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선택의료급여여기관 이용시
	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 (일정기한 내)

2. 지원내용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 지원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2. 지원내용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원(72,000원/연)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의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드립니다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보을 제외하여 환급

3. 지원(신청)절차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잔액이 있는 경우 연 1회 본인 계좌로 지급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129)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암환자
- 건강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소득·재산조사 후)

2. 지원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천만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천만원(단,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희귀질환자(133종)이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 가구(산정특례 등록 후 신청 가능)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536만원) 미만,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기준 2억 9,055만원)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4인기준 893만원), 재산은 최고재산액 500%(대도시 4인기준 4억 8,426만원) 미만

2. 지원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근육병 등 질환자에게 보장구(8종) 구입비, 간병비(11종)를 지원합니다.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에게 특수식이 구입비(만 18세 이상, 7개 질환)를 지원합니다.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입원·격리치료 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 보호비 지원

1.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4인기준 536만원) 미만인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2. 지원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지원합니다.

〈2017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47,940원 증가
(8인 가구 : 2,331,973원)

3. 지원(신청)절차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입원·격리치료 환자) →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지원여부 통보(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입원명령이란?

- 난치성 결핵인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나 치료에 순응하지 않는 결핵 환자들을 입원시켜 전염성이 소실될 때까지 결핵 치료를 돕고, 관련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국가건강 검진제도

1.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세부내용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건강보험가입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만 19~64세 세대주 및 만 40~64세 세대원 ※ 일반건강검진(2년 1회, 비사무직은 1년 1회) 대상자 중 만 40~66세를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																								
암검진	•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의 남·여(2년 1회) • (간암검진) 만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검진) 만 50세 이상의 남·여 (1년 1회) • (유방암검진) 만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자궁경부암검진) 만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영유아 건강검진	• 만 0~5세 영유아 - 월령별로 총 7회(구강검진 3회) 검진실시 <table><tr><th>구분</th><th>(1차) 4-6 개월</th><th>(2차) 9-12 개월</th><th>(3차) 18-24 개월</th><th>(4차) 30-36 개월</th><th>(5차) 42-48 개월</th><th>(6차) 54-60 개월</th><th>(7차) 66-71 개월</th></tr><tr><td>건강검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구강검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구분	(1차) 4-6 개월	(2차) 9-12 개월	(3차) 18-24 개월	(4차) 30-36 개월	(5차) 42-48 개월	(6차) 54-60 개월	(7차) 66-71 개월	건강검진	○	○	○	○	○	○	○	구강검진	-	-	○	-	○	○	-
구분	(1차) 4-6 개월	(2차) 9-12 개월	(3차) 18-24 개월	(4차) 30-36 개월	(5차) 42-48 개월	(6차) 54-60 개월	(7차) 66-71 개월																		
건강검진	○	○	○	○	○	○	○																		
구강검진	-	-	○	-	○	○	-																		
학생 건강검진	•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 (초등학교 1, 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																								

2. 지원내용

구분	지원 세부내용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검진항목)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건강위험요소 파악, 폐결핵 및 흉부질환,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 ※ 만 40세 : B형 간염 항원항체검사 등 25개 항목 ※ 만 66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골밀도검사, 인지기능장애 문진 등 25개 항목
암검진	• (위암검진)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한 가지 선택 • (대장암검진) (1차) 분변잠혈검사 (2차) 대장내시경검사 • (간암검진)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유방암검진)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검진) 자궁경부세포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항목) 시각이상(사시), 굴절이상(약시), 청각이상, 영양결핍(과잉), 치아발육상태 등
학생건강검진 (교육부)	• (검진항목)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색각이상유무,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	• (검진항목)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건강위험요소 파악 등

3. 지원(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예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립니다.

정신건강 증진센터 이용

1. 지원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지역사회 내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2. 지원내용

정신 질환자 대상 투약·치료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해당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1. 지원대상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지역주민

2. 지원내용

각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합니다.

- | | |
|-----------------------|----------------------|
| • 흡연예방 및 흡연자 금연 촉진 | •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
| • 음주폐해 예방관리 | •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
| •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 및 비만 |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
| 관리를 위한 개인별 서비스 제공 | 환자 지원 |
|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 •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
| • 신체활동 및 비만 건강관리 | • 치매검진 및 사례관리 |
| • 구강건강 증진 및 구강병 예방 관리 | • 가정방문 건강관리 등 |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129)

재가암 관리

1. 지원대상

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저소득층 암환자(치료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등)

2. 지원내용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상담, 통증관리, 투약지도, 간호서비스 제공 및 치료약품과 기타 소모품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전국 보건소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 지원대상

-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응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기타 중독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지원내용

-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치료를 통한 고위험군을 발굴 후 심층 사정평가 수행, 교육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독자 개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서비스 외에도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독폐해 관련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이용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1등급~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 서비스와 목욕, 간호 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등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3. 지원(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4.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경감적용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에 해당하는 자

- ※ 4인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예시
 - (지역) 59,930원
 - (직장) 69,110원(재산과표액 2억 5천만원 이하)

2.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50%를 경감해 드립니다.

3. 지원(신청) 절차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 단, 소급 적용의 경우 유선신청 가능

4.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1000,
<http://www.longtermcare.or.kr>)

memo

memo

노령층 지원서비스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 치매가 걱정될 때
-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드려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제도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017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2. 지원내용

매월 최대 206,050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17.4월 기준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206,05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329,680원
※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은 최소 2만원까지 차등하여 받게 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과거에 탈락이 되셨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자 가능여부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2. 지원내용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전국 109개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4.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홈페이지(<http://csa.nps.or.kr>)

노후긴급 자금 대부 사업

1.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2. 지원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고 75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드립니다.
※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3. 지원(신청)절차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4.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택연금 제도

1. 지원대상

주택을 소유(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하고 있으나 다른 소득마련 방안이 없어 노후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60세 이상 어르신

2. 지원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보증하여 드립니다.

※ 집값이 3억원인 경우 60세 가입자는 매월 629,76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4,530원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중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17.2월 가입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인출하여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하실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하여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은퇴금융 아카데미

1. 지원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

2. 지원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은퇴준비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에 관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수강 지역, 일정 선택하여 신청

4.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memo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 자리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1. 지원대상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재능나눔활동 : 만 65세 이상
- 취업창업활동 : 만 60세 이상(소득기준 없음)

2. 지원내용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및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 공익활동 : 월 22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30시간 이상)
※ 노노케어, 취약계층 돌봄, 경륜전수활동 등
- 재능나눔활동 : 월 1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창업활동 : 노인일자리 취업창업사업단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노인일자리 생산품(반찬, 서툰죽 등) 제조·판매, 아파트 택배 등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수당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활동수당은 기초연금대상자 선정시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어르신들에게 활동 및 여가·문화·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1. 지원대상

일반 노인

2. 지원내용

동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를 돕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음껏 참여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별도 신청 없이 이용

4. 문의처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 지원대상

가족·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2. 지원내용

봉사, 취미활동, 운동, 일거리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1. 지원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 2. 지원내용**
문화학교(악기,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 문화나눔 봉사단, 문화동아리 등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문화원, 문화의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제출
※ 매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내 주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필요
- 4. 문의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02-704-4332)

고령층 정보화 교육

- 1. 지원대상**
55세 이상
- 2. 지원내용**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홈페이지 제작법 등의 과정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문의 후 신청
- 4.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정보화 교육(☎053-230-1392, www.itstudy.or.kr)

온라인 정보화 교육

- 1. 지원대상**
전국민
- 2. 지원내용**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홈페이지 제작법, 스마트폰 활용, IT 자격증 과정 등 80개의 수준별 온라인 정보화교육 과정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문의 후 신청
- 4.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민정보화 교육(☎053-230-1114, www.itstudy.or.kr)

memo

치매가 걱정될 때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치매검진 지원

1. 지원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36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

2. 지원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국 600여개소 협약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진단·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8만원)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 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지원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536만원)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도 기준 충족 시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2. 지원내용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까지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memo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어르신들의 안질환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하고 치아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노인실명 예방

1. 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4인기준 268만 428원) 이하인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우선)

2. 지원내용

- 노인 안검진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등을 지원합니다.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노인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등 기타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예상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노인틀니 지원

1. 지원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2. 지원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클래스프(갈고리형 연결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적용하여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3. 지원(신청)절차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노인치과 임플란트 지원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알려드립니다

●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2. 지원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하여 해당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평생 2개)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3. 지원(신청)절차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 하는 질문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지원내용

거주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폐렴구균 무료접종, 보건소 및 17,000여개 참여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전국 보건소 및 17,000여 지정 의료기관(인플루엔자에 한함)에 방문 신청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자주 하는 질문

●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 간에는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memo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4인 기준 718만원) 이하인 어르신

※ 단기가사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 가구 또는 조손가정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 만 18세 미만 아동과 동거하는 단독노인 또는 고령의 노인 부부 중 사·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2. 지원내용

유형	세부 지원내용
방문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주간보호	보호시설에서 여가활동, 물리치료·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제공
단기 가사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치매가족 휴가지원 서비스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카드 발급 → 모니터링 및 서비스 대상자 관리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하신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2. 지원내용

건강상태, 생활환경 변화 및 욕구를 파악하여 안전확인, 생활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안전확인 서비스는 주 1회 이상 직접방문 및 2~3회 전화확인

※ 생활교육은 생활관리사별 월 1회, 독거노인별 분기당 1회 이상 실시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 보건복지콜센터(☎129)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가장인 인정하는 독거노인 중 치매환자 또는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2. 지원내용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 내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 센서,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리고 119에 신고하여 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1. 지원대상**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 2. 지원내용**
 - 학대 피해 노인 전문 상담 및 일시보호,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 4. 문의처**
비긴급신고전화(☎110)

memo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교통비에서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요금감면으로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절차 및 문의처
교통비	65세 이상 노인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시 신분증 제시(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65세 이상 노인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그 밖에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시 신분증 제시
국민 건강 보험료	지역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 재산 6천만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 재산 9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경감 -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10% 경감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절차 및 문의처
각종 공공 요금	노인 복지 시설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illegible]

memo

장애인 지원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
- 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 각종 요금을 감면 받고 싶을 때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을 드려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연금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지)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2. 지원내용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을 지원해드립니다.

- 기초급여 : 만 18~64세, 근로능력 상실 등에 따른 소득 보전
- 부가급여 : 만 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의 일부 보전
(‘17년 4월 기준)

구분	만 18세 ~ 만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8만 6,050원 기초급여 20만 6,050원 부가급여 8만	28만 6,050원 부가급여 28만 6,050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27만 6,050원 기초급여 20만 6,050원 부가급여 7만	7만 부가급여 7만
차상위 초과	22만 6,050원 기초급여 20만 6,050원 부가급여 2만	4만 부가급여 4만

* 차상위계층 : '17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23만 3,690원) 이하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장애등급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시는 경증장애인은 장애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시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07.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은 경우
 2. '07.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검사비용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 범위 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검사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 범위 내

memo

장애수당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급, 4급, 5급, 6급)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저소득 경증(3~6급) 장애인에게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구분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4만원	4만원	2만원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에 대해 압류방지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중증(1급, 2급, 3급 중복)·경증(3급, 4급, 5급, 6급) 장애아동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2. 지원내용

저소득 중증·경증 장애아동에게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20만원	월 10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월 10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7만원	월 2만원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현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1. 지원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1~6급 여성장애인
- 2. 지원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지원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 1. 지원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 2. 지원내용**
중증 및 경증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중증 62만 7천원, 경증 55만 1천원)을 지급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 1. 지원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 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 2. 지원내용**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해드립니다.
• 장애아반 편성 장애 아동 : 월 43만 8천원
• 장애아반 미편성 장애 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1.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 2. 지원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21만 9천원)를 지급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아동 양육수당

1.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지원내용

- 0~36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 36~84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1. 지원대상

- 장애아보육료(취학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2.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7:30~19:30)을 경과* 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지원단가 시간당 4,000원)

* 기준시간을 초과한 19:30~24:00, 토요일 15:30~24:00

3. 지원(신청)절차

어린이집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531만 2천원) 이하 가정

※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유형	세부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무료 제공(아동 1인당 연48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4인기준 796만 8천원)인 발달 장애인 및 그 가족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비 참여는 가능하며, 돌보미의 여행비용 및 수당은 지원

2.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극복 및 휴식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체험 등)을 지원합니다.(1인당 최대 22만 7천원, 발달 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3. 지원(신청)절차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장애인이 보다 자유롭게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 1.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 1~3급인 학생
※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경증(4~6급) 또는 기준 외 학생도 포함
- 2. 지원내용**
장애대학생의 대학 내 이동 및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학습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대학에서 도우미를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17학년도 3,000명)
- 3. 지원(신청)절차**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문의 후 신청
- 4. 문의처**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http://doumi.kcce.or.kr>)
 - 교육부(☎044-203-6954)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1.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 2. 지원내용**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시·도청 장애인담당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1.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2. 지원내용**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3. 지원(신청)절차**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 4. 문의처**
교육부(☎044-203-6562)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 1.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 2. 지원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을 지원합니다.(중증장애학생 우선 지원)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합니다.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정 학부모의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위해 종일반을 운영합니다.(방과후학교와 종일반 중복지원 불가)
- 3. 지원(신청)절차**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
- 4. 문의처**
교육부(☎044-203-6560)

장애인 정보화교육

1. 지원대상

- 전문교육 : 모든 등록 장애인
- 방문교육, IT긴급지원서비스 : 1~2급 중증장애인

2. 지원내용

- 전문교육 : 전국 147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홈페이지 제작법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합니다.(교재, 교육비 전액 무료)
- 방문교육 : 방문 정보화강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1일 3시간씩 주 3회(총20회) 정보화교육을 실시합니다.(교재 일부, 교육비 전액 무료)
- IT긴급지원서비스 : 컴퓨터 수리, 정보통신기기 활용법 등 정보화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전화 상담 및 방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인 월 최대 2회, 연 6회 서비스 제한)

3. 지원(신청)절차

한국정보화진흥원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www.itstudy.or.kr)

memo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2. 지원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지원 내용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등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 - 일반교사 및 학생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 이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공
이압	blind.nise.go.kr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EBS 방송 강의, 점역 등 대체자료 제공

4. 문의처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 ☎041-537-1485)

memo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지원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 (훈련수당)

1.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으로서 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 이수 및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2. 지원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청각장애인훈련센터(1개소), 맞춤형훈련센터(3개소), 발달장애인훈련센터(4개소)

구분	지원내용
훈련준비금	6일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 4만원 지급(입학시 1회 한하여 지급)
훈련참여 수당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에게 월 28만 4천원 지급 ※ 맞춤형훈련생은 월 20만원 지급
가계보조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월 7만원 지급
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을 받는 사람 중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있는 경우 3명까지 1명당 3만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원 지급
식비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에 의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6만 6천원 지급

3. 지원(신청)절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은 수시 입학 지원

※ 직업능력개발원의 정규훈련, 청각·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하여야 함

4.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기간은 얼마 동안인가요?**
 -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의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과 1,400시간(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 등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전체 훈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하여 훈련을 받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다른 훈련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훈련생이 훈련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훈련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훈련직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하나요?**
 - '17년부터 공단의 맞춤형훈련과정을 제외한 모든 훈련과정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인 진로설계 과정을 수료하여야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신청을 하여 선정되면 진로설계를 위한 상담 등의 1단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해 주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되며,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훈련수당 지급기한은 최대 1년입니다.
-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반드시 기숙사 생활을 하여야 하나요?**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통학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1. 지원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지원
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지원내용

- 훈련기간(3~7주) 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훈련준비금 4만원 및 훈련수당 1일 1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재해보험가입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

4.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memo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 일자리 지원

장애로 인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기관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미취업 등록 장애인	시·군·구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전일제 일자리 지원	일 8시간 주 5일	135만 3천원
시간제 일자리			일 4시간 주 5일	67만 6천원
복지 일자리		도서관, 우체국, 학교, 복지관 등에서 공공형(사회보조, 우편물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일자리 지원	주 14시간 월 56시간	36만 3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에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일 5시간 주 25시간	106만 6천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노인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노인요양보조 일자리 지원	일 5시간 주 25시간	84만 4천원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용자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2. 지원내용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비용을 용자해 드립니다.
※ 사업주당 15억원 한도,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용자금 1억원당 장애인 1명을 용자기간 동안 고용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 통근용 승합자동차,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당 3억원 한도,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중증 장애인 1천 5백만원)

3. 지원(신청)절차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공단 관할지사에 신청

4.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lead.or.kr)

자주 하는 질문

- **용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대출금리는?**
 - 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1%의 대출금리로 용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통근용 승합자동차 지원조건은?**
 - 장애인근로자를 2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2년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5년간 차량을 용도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1. 지원대상

15세 이상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

2. 지원내용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중증 및 여성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이 훈련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거주지 인근의 훈련기관을 이용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유형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훈련기관 훈련이 있습니다.
※ 민간위탁훈련기관 훈련생은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하여 월 40만원 훈련수당 지원,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연계조건) 하고 있습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은 수시 입학 지원이 가능하며, 한국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은 별도의 모집기간에 지원

4.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lead.or.kr)

자주 하는 질문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17년도부터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운영되므로 고용부로부터 직업훈련을 위한 계좌발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를 수료 후 2단계 민간훈련기관 직업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공단지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2.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투자액의 75%를 지원
합니다.(10억원 한도)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로 신청
※ 신청시기 : 공단 홈페이지 별도 공고
※ 관할지사 조사, 전문컨설팅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4.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할 것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이 취업과 창업,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3만 3,690원) 초과
100%(4인 기준 446만, 7,380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구분	대출한도 (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천 2백만원 이내	(무보증대출조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보증대출	2천만원 이내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납세 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원 이상	
담보대출	5천만원 이내	-	

※ 대여목적

-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⑥ 자기개발훈련비
-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지원(신청)절차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등 관련서류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
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가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1.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가업
※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지원내용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가업에 비즈니스 공간 제공, 장애인
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성공을 유도합니다.

-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 보증금 10만원/평, 관리비 1만원/평/월
(지역센터) 보증금 5만원/평, 관리비 1만원/평/월
- 장애인가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 지역센터별 창업보육실 현황 : 16센터 132실
(서울 20, 경기 8, 인천 8, 대전 6, 광주 6, 부산 6, 대구 6, 충남 8, 경남 8,
울산 8, 강원 8, 제주 8, 전북 8, 전남 8, 충북 8, 경북 8)

3. 지원(신청)절차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처

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www.debc.or.kr)

memo

장애인 창업교육

1.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변경을 희망하는 장애경제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제공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제공
 - 창업기초교육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초소양 제고
 - 업종특화교육 : 특정 창업 유망업종에 대한 업종심화지식 함양
 - 역량강화교육 : 창업초기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
 - 재기교육(신설) : 센터 지원으로 창업했으나 실패자 대상 재기 지원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지원, 보육실입주 등 연계
 - 창업점포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점포 보증금 지원
 - 보육실입주지원 : 창업을 했거나 희망하는 장애인가업의 보육실 입주지원
 - 장애인가업육성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3. 지원(신청)절차

교육수행기관 모집·심사 → 수행기관 및 교육과목 확정 → 교육 실시
→ 창업지원연계(점포·보육실입주지원)

4. 문의처

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02-2181-6521, www.debc.or.kr)

memo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11년부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창업과정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2. 지원내용

창업점포 전세보증금(1억원 한도 내)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비 1천만원(자부담 20%)을 지원해드립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최초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 3년 종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추가 2년 지원
- ※ 최초 계약기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하여 대상자 부담

3. 지원(신청)절차

창업점포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 → 협약 → 점포
개발 컨설팅 → 창업점포 선정평가 → 사후관리

4.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20, www.debc.or.kr)

memo

[illegible]

근로지원인 지원

1. 지원대상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지원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장애
인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하여 결정)
 -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등을 지원합니다.
- ※ 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3. 지원(신청)절차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4.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memo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1. 지원대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실시기관	훈련수당
직업적응 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훈련, 작업환경적응 및 직업능력향상 훈련 실시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월 7만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과 연계가 가능한 기술 훈련 실시 (안마수련, 바리스타, 정보처리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	월 20만원 (훈련준비금 4만원, 1회)

3. 지원(신청)절차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방문 신청

4.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홈페이지(www.vr.koddi.or.kr)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용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
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2.9%(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2%)를 초과
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 근속년수에 따라 월
15~60만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 6급 장애인(국가유공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 지원

3. 지원(신청)절차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4.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1.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임·
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2. 지원내용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은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신청

4.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보조공학
기기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2. 지원내용

보조공학기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 장애인 1인당 최대 300만원(중증 500만원)까지 무상 지원
- ▶ 장애인 1인당 최대 1,000만원(중증 1,500만원)까지 고용조건부로 지원
- ▶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 ※ 고용조건부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기기의 경우 보증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

3. 지원(신청)절차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 실시하여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4.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memo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용의 80%(단, 생계급여수급자는 90%)를 지원합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 독서확대기와 같이 장애로 인해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

3. 지원(신청)절차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계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4. 문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도우미(☎1588-2670)

memo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로 인한 진료·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재활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 장애인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대상 아님

2. 지원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구분	1차 의료기관	2,3차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는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3. 지원(신청)절차

의료기관 진료 시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증빙서류(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3만 3,690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 질환자 등

●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지원내용	상세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 적용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 1~2급 : 30% 감면 -장애등급 3~4급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 : 1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등록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3. 지원(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장애인 보장구 급여

1. 지원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자·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3. 지원(신청)절차

- 건강보험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후 신청
- 의료급여수급권자 : 시·군·구청 장애인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5만원 초과 검사비용 일부지급(최대 10만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원 초과 검사비용 일부지급(최대 10만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일부지급(최대 10만원)

3. 지원(신청)절차

장애검사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1.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2. 지원내용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천원)를 지급합니다.

※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3. 지원(신청)절차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인등록진단비 및 검사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시각·청각 장애인

2. 지원내용

22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합니다.

지원대상	교부 품목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청취증폭기
1~2급지체·뇌병변장애인(근육병증 등) 단, 보행용보조기구 및 목욕의자는1~4급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식사보조기구,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3. 지원(신청)절차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 → 접수된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 → 신청서를 검토하여 교부여부를 결정

4. 문의처

장애인보조기구센터(☎1670-5529)

memo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 1. 지원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2. 지원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에 문의 후 서비스 신청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1. 지원대상**
 - 신규수술 : 의료기관이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적격자로 진단한 청각장애인
 - 재활치료 : 최근 3년간(2014.1.1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자
※ 재활치료는 수술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만 신청 가능
- 2. 지원내용**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최대 700만원) 및 재활치료비(수술 후 3년간 105만원)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사·도, 시·군·구에서 정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발달재활 서비스

- 1. 지원대상**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4인기준 796만 8천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 2. 지원내용**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하여 이용
- 3. 지원(신청)절차**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반드시 장애등록을 하여야만 받을수 있나요?
-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장애등록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하여야 함)

memo

언어발달 지원

1. 지원대상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쪽(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며,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 120%(4인기준 637만 4,400원) 이하인 가구의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2. 지원내용

매월 16~22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1. 지원대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중 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4인기준 796만 8천원) 이하인 가구

2.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월 16만원의 상담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월 3~4회, 회당 50~100분, 12개월간 제공)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이용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2. 지원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을 지원합니다.

※ 전국 18개소 운영(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3. 지원(신청)절차

시·도, 시·군·구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하여 의료 급여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을 제시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 지원대상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맞춤형 재활서비스, 재활보조기구 대여, 자가관리교육,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1. 지원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2. 지원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추가급여
1등급	109만 1천원	독거, 취업, 취학여부, 출산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 9만 3천원~252만 3천원 추가 지급
2등급	86만 9천원	
3등급	65만 7천원	
4등급	43만 5천원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한번 신청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 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 지원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2.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를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1. 지원대상

무주택세대주인 등록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2.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 LH공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LH공사(☎1600-1004)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1. 지원대상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가구당 최대 380만원)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1. 지원대상

- 무료이용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실비이용대상자 :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요양·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장애인 거주시설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 지원대상

실비입소 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된('15년 기준 22개소)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저소득층

2. 지원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8만 6천원을 이용중인 장애인
거주시설로 직접 지원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4인기준 796만 8천원)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2. 지원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15만원, 2인 30만원, 3인 이상
40만원)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무료 법률 구조제도

1.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58만 4,225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2. 지원내용

- 1~3급 중증장애인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4급이하 등록장애인 :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인지대 등 소송 비용은 본인부담)

3. 지원(신청)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청각 장애인용 TV)

1. 지원대상

시·청각 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장애인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시·청각 장애인용TV 전용 홈페이지(<http://tv.kcmf.or.kr>)에서 신청

※ 신청 공지(5~6월), 신청기간 및 대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업무협약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알려드립니다

● 시·청각 장애인용 TV란?

- 장애인 방송(자막·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자막의 크기·위치·색상을 쉽게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을 갖고 있는 TV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1.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2. 지원내용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합니다.

-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2. 지원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여,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1. 지원대상

1~4급인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1~6급)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2.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하는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지원(신청)절차

국립재활원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

자주 하는 질문

- **운전면허는 있는데 장애를 입은 경우 운전교육이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CPAD검사 후 합격 유무에 따라 운전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은 지체·뇌병변·청각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5~6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면 운전교육이 가능합니다.
-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에서는 1종보통과 2종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지원대상

1~3등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2. 지원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 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126)

memo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지원대상

- 장애등급 1~3급인 장애인 본인(시각 4급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드립니다.

-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세무(채무)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행정자치부 콜센터(☎02-2100-3399)

알려드립니다

● 감면된 자동차 취득세가 추정되는 경우?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정됩니다.

상속세 상속공제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장애인이 75세에 이르기까지 남은 연도에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126)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지원(신청)절차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126)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처

세무서 문의(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주변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통해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 2. 지원내용**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 복지관

-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 2.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 체육시설

-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등
- 2. 지원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을 지원 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2. 지원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 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 4. 문의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02-2092-0001, 0088)

수화통역 센터

- 1. 지원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 2. 지원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시 출장 수화통역, 일반인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지역별 수화통역센터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처**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각종 요금을 감면 받고 싶을 때

일상 속의 다양한 요금 감면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 내역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절차 및 문의처
방송요금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로 신청 (미래창조과학부 ☎1335)
교통비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감면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대한항공 ☎1588-2001)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 감면 - 4~6급 장애인 20% 감면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감면 내역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절차 및 문의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중증장애인(1~3급) 50% 감면 - 경증장애인(4~6급)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 이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발급은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은 주민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요금	1~3급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전기요금 감면(여름철 월 2만원, 기타계절 월 1만 6천원 한도)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 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1~3급 장애인	• 질서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1~3급)	사이버경찰청 (☎182)
기타	등록 장애인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 (☎1544-7788)

보훈대상자 지원서비스

국가를 위해 희생이나 공헌을 하셨나요?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 보훈급여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2. 지원내용**
희생과 공헌의 정도 및 고령, 무의탁 등 수급권자의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여 매월 17만 3천원~525만 8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
- 4.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 1. 지원대상**
상이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2. 지원내용**
개호 필요성에 따라 상시 및 수시로 구분하여 간호수당을 지급합니다.
※ (상시 간호수당) 매월 230만 6천원, (수시 간호수당) 매월 153만 7천원
-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
- 4.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 1. 지원대상**
보상금을 수령하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친족 중 상속인

- 2. 지원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천원~326만 8천원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금액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112만 7천원 ~ 326만 8천원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112만 7천원 ~ 226만 1천원
상이군경(상이등급별)	112만 7천원 ~ 170만 4천원
재일학도의용군	112만 7천원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112만 7천원

-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
- 4.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기준 223만)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 지원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
• 3인 이하 가족 : 16~22만원
• 4인 이상 가족 : 21~27만원

-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
- 4.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무공영예 수당

1.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2. 지원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금액	30만원	29만 5천원	29만원	28만 5천원	28만원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

4.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1. 지원대상

애국지사

2. 지원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3급	4급	5급	
월지급금액	155만원	128만원	115만원	105만원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

4.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영주귀국 정착금

1. 지원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 유족: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2. 지원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7천만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1.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영주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7천만원
	2. 정착금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가.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4천 5백만원
	나.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5천 5백만원
	다.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7천만원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

4.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보상금

1. 지원대상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과 전투 또는 복무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2. 지원내용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의무경찰 등이 전투 또는 복무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상이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

4.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주 하는 질문

● 6.25때 군인으로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형님의 사망보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해 군인이 사망한 당시의 유족 중 동일 호적내의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순위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사망사실이 유가족에게 통지된 지 5년이 경과되거나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정리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6.25때 사망하였으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 유해발굴 등으로 전사사실을 안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국방부 훈령 '순직재분류자 등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지침'에 의거 지급)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위로금

1.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2. 지원내용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주거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인명피해 : 사망·실종 500만원, 부상 30만원
- 주택피해 :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50만원
- 국가유공자 공동이용시설 피해 : 대규모 500만원, 일부 250만원
- 기타 재산 피해 : 30~50만원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

4.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6·25자녀 수당

1. 지원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선평위 자녀 1인

2. 지원내용

- 제적자녀(전사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어 제적된 자)에게 매월 118만 1천원을 지급합니다.
※ 제적 위로 가산금 5만원 지급
- 승계자녀(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97년 이전에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된 자)에게 매월 100만 4천원을 지급합니다.
- 신규대상('98.1.1.이후에도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보상금을 받다가 제적된 자)에게 11만 8천원을 지급합니다.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천원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

4.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 지원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의 2세 환자로 결정된 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 | 구분 | 고도 | 중등도 | 경도 |
|----|----------|----------|---------|
| 금액 | 153만 1천원 | 118만 9천원 | 95만 5천원 |
-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
 -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지원대상**
월남참전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자로 판정된 사람
 - 지원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 | 구분 | 고도 | 중등도 | 경도 |
|----|---------|---------|---------|
| 금액 | 85만 9천원 | 63만 4천원 | 41만 6천원 |
-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
 -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참전명예수당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매월 22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
- 문의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 지원대상**
 - 국비진료 대상 :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환자 등과 같이 신체 상이자가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대상 :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등 직접적인 희생이 없는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 지원내용**
 - 국비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감면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30~6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종류	내용
보훈병원진료	5개 보훈병원 직접 진료
응급진료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통원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전문위탁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 등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 곤란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하여 받는 진료
위탁병원진료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비진료대상자와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이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
보철구 지급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취형·장착해 드리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 지원(신청)절차**
 - 보훈병원 :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보훈지원>지원안내 →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 생활안정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재가복지 지원

1. 지원대상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곤란한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손)자녀 제외) 중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 부부세대(국가보훈처에서 생활수준 기준을 정함)

* 만 65세 미만일지라도 보훈병원 가정간호 대상자 등은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주 1~2회 보훈섬김이가 자택을 방문하여, 취사·세탁·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돕고, 식사 수발, 병원동행, 노인·의료용품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노후복지서비스지원 신청서'를 보훈(지)청에 접수

4.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memo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 지원대상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정도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2.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 80%
- 그 외 유공자 및 유족((손)자녀 제외) : 40%(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60%)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자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경감대상자)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

4.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요양원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아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금액의 100%(4인기준 4,467,380원) 이하인 보훈요양원 입소자

- 장기요양 1~2등급자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2. 지원내용

보훈대상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를 지원합니다.

* 상이등급 1급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3. 지원(신청)절차

보훈요양원 입소 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

4.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양로지원

1. 지원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2. 지원내용

보훈원(수원시 소재 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제공, 의료서비스 및 사망 시 묘지 안장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훈원으로 양로소 입소 신청

4. 문의처

- 보훈원 ☎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양육지원

1.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남동생과 여동생

2. 지원내용

보훈원(수원시 소재 양육시설) 입소 후 성년이 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대학까지 교육을 지원하며 생필품, 취업알선 및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훈원으로 아동보육소 입소 신청

4. 문의처

- 보훈원 ☎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보훈병원 진료

1. 지원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2. 지원내용

대상	세부 지원내용
국비진료	•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 (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20% 본인부담 - '12.7.1. 이후 등록된 7급 상이유공자 (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16.6.23. 이후 등록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를 통해 팔보조기, 보청기 등 보철구 지원
감면진료	• 본인부담 진료비 30~60% 감면

3. 지원(신청)절차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4.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memo

위탁병원 진료 (시·군별 지정 의료 기관)

1. 지원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

2. 지원내용

대상	세부 지원내용
국비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20% 본인 부담 - '12.7.1. 이후 등록된 7급 상이유공자 (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16.6.23. 이후 등록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감면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 감면 ※ 약제비 제외

3. 지원(신청)절차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보훈지원>지원안내 →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4.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 대상자 LPG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고·중·경도)

2. 지원내용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전국 보훈관서에서 통합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4.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교통시설 이용 지원

1. 지원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2. 지원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신청)절차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발급 후 이용

4.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1.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 유족, 보훈 보상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2. 지원내용

주택의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의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연이율 2~3%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6,000만원, (상환기간) 3~20년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인근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4. 문의처

- 국민은행(☎1599-9999) 및 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 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12.7.1.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2. 지원내용

- 취업수강료 지원 :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일정 과정(과목)의 학원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공무원시험, 정보화자격증, 어학과정 등에 대한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지원기간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간이며, 1인당 연간 50~100만원 까지 지급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자격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월 4만원 지급

3. 지원(신청)절차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 및 한도액 확인 후 신청 → 지원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대상여부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보훈(지)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공공 직업훈련기관 입소자 확인 → 지원대상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4. 문의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 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12.7.1.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2. 지원내용

- 특별채용 : 국가기관 등이 일반직 공무원*(기능 군무원 포함) 정원의 의무채용비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채용합니다.
 - * 일반직 공무원 : 방호, 운전, 위생 등 일부 특별채용 직렬
- 보훈특별고용 : 기업체 등이 전체 고용인원의 의무고용비율(3~8%)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채용합니다.
 - ※ 공기업체 등은 위의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
- 가점 취업 :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응시자의 점수에 10% 또는 5%의 가점을 부여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 특별채용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외회 → 추천 → 채용
- 보훈특별고용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최종 합격자는 법정취업자로 인정

4. 문의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1. 지원대상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부사관으로 전역한 자
-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
-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 생활수준조사 결과 기준금액(4인기준 446만원) 이하인 자

2. 지원내용

-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을 받아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 보훈특별고용 : 일반기업체 등의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상 (공기업체 등은 1% 가산)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의무고용
- 특별채용 : 국가기관 등 일반직 공무원*(기능 군무원 포함) 정원의 15%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채용
- * 일반직공무원 : 방호, 운전, 위생 등 일부 특별채용 직렬

3. 지원(신청)절차

-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 ※ '제대군인 취업희망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택 1)

4. 문의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지원

1. 지원대상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자

2. 지원내용

- 주택구입, 사업,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3~4% 저금리로 300~6,00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3~20년 상환)

3. 지원(신청)절차

- 거주지 인근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4. 문의처

- 국민은행(☎1599-9999) 및 농협은행(☎1588-2100)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1. 지원대상

-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을 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2. 지원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25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4. 문의처

-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vnet.go.kr>)
- 서울센터(☎1588-2339)
- 경기북부센터(☎1577-3883)
- 경기남부센터(☎1577-1973)
- 부산센터(☎1577-7339)
- 대전센터(☎1577-2339)
- 대구센터(☎1577-6339)
- 광주센터(☎1577-8339)
- 창원센터(☎1522-0739)

memo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1. 지원대상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에서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하여야 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2. 지원내용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중·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3. 지원(신청)절차

- 중·고등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신청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하여 신청

4.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지원>지원안내>교육지원 참조

국가보훈 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1. 지원대상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에서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2. 지원내용

연간 중학교 12만 4천원, 고등학교 14만 4천원~18만 6천원, 대학교 23만 6천원, 특수학교 53만 4천원~71만 8천원의 학습보조비를 지급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연간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4.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지원>지원안내>교육지원 참조

memo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1. 지원대상

- 대학원 장학 :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특수학교 장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6·25전몰군경 자녀의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자

2. 지원내용

- 대학원 장학 : 학기별 최대 11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특수학교 장학 : 학기별로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학기별로 학사과정은 최대 90만원, 전문학사과정은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주소지 관할 전몰군경유족회 시·도지부에 신청
※ 접수기간 : 1학기(2017.3.1~3.15), 2학기(2017.9.1~9.15)

4. 문의처

-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지원>지원안내>교육 지원 참조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전몰군경유족회(☎02-782-0427)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

1. 지원대상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복학 한 자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일정 생활수준(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4인기준 446만원) 이하인 사람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2. 지원내용

-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3. 지원(신청)절차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당학교에 증명서 제출

4.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memo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 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 위기가족 지원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도움을 지원합니다.

건강가정지원 센터 운영

1. 지원대상

가정 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모든 가족

2. 지원내용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교육을 제공합니다.
 - ※ 신혼가·중년가·노년가 부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 가정 내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상담을 실시합니다.
 - ※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상담 등
-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 ※ 가족캠프, 가족사랑의 날 행사, 건강가정캠페인 등

3. 지원(신청)절차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및 방문,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번호(☎1577-9337)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1. 지원대상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아동

2. 지원내용

이혼상담, 부부상담, 자녀 양육에 관한 상담, 면접교섭권, 교육, 가족 캠프 등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교육·문화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면접교섭권이란?

-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지원(신청)절차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신청

4. 문의처

- 부산 건강가정지원센터(☎051-330-347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053-745-4501)
-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032-765-6966)
- 대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42-252-9989)
-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
- 순천여성상담센터(☎061-753-9900)

memo

미혼모·부 초기지원

- 1. 지원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 2. 지원내용**
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및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통한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거점기관*에서 신청
* 거점기관 목록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한부모>미혼한부모지원>양육 및 자립)
- 4. 문의처**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memo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4인기준 232만 3,038원)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 2. 지원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 만 13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2만원 지급,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 4,100원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지급
- 3. 지원(신청)절차**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4.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상담(www.mogef.go.kr)한부모>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알려드립니다

● 한부모가족이란?

- 복지서비스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4인 기준 232만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 지원내용**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매학년 초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
- 4. 문의처**
교육부(☎1544-9654)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주택분양·임대)

- 1. 지원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2. 지원내용**
 - 각종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 임대·전세임대의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합니다.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임대보증금을 국비지원 하여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10개 시도 운영 중)
- 3. 지원(신청)절차**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공사 홈페이지 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 기관추천의 경우 거주지 시도청 여성가족과 등 한부모담당 부서에 문의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운영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
- 4. 문의처**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공사(☎1600-1004)
 - 공동생활가정형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1.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부자 및 모자가정, 미혼모자가정 등)
- 2. 지원내용**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인성교육 등), 의료혜택 등을 지원합니다.
※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
-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 신청
- 4.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 1.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가족 등
- 2. 지원내용**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공통서류, 추가서류를 우편·방문·온라인 등으로 제출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정보공간>자료실
- 4. 문의처**
 - 양육비 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 상담(www.childsupport.or.kr)
 - 방문 상담 예약(☎02-3479-5529)

알려드립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란?**
-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8만 428원) 이하
이면서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17만원 지급
- 검정고시학습비 :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 시
최대 154만원까지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지급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 자립지원촉진수당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
이면서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원 지급

3. 지원(신청)절차

-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 상담(www.mogef.go.kr)한부모>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자주 하는 질문

- **청소년 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 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12만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받은 가구는 아동 1인당 15만원을 받게 되며,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아동 1인당 1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2.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원~43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참조 104p)

3. 지원(신청)절차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 지원 (주택 특별공급)

1. 지원대상

무주택 다문화가족

2. 지원내용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LH공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LH공사(☎1600-100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3만 3,690원)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2. 지원내용**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자활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참조 20p)
-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콜센터(☎129)
 - 주거급여 : 콜센터(☎1600-0777)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긴급복지지원 제도

-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고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다음의 국내체류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또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이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2.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동절기 연료비, 해산·장제·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참조 24p)
-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 1. 지원대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한국국적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국민 포함)
- 2. 지원내용**
우리말과 문화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의 이해(50시간) 과정을 제공합니다.
 ※ 과정 이수 시 국적필기시험 및 국적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등의 혜택 제공
 ※ 전국 327개 기관에서 운영
- 3. 지원(신청)절차**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신청
- 4. 문의처**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지원

- 1. 지원대상**
한국으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 2. 지원내용**
청소년 초기적응 지원,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적응 및 문화통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프로그램 연계 등 서비스 지원 → 사례관리
- 4. 문의처**
 - 여성가족부(☎02-2100-6280)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02-722-2585, www.rainbowyouth.or.kr)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 1.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 다문화·탈북 학생
- 2. 지원내용**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관련 상담·놀이 학습, 한국문화 체험 등의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 (활동시간) 연간 120시간 내외, 1일 8시간, 주당 20시간 이내(방학 중 40시간 이내)
- 3. 지원(신청)절차**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자주 하는 질문

-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학생 멘토의 급여는 국가교육근로장학금으로 지급되므로, 학부모님께서 별도로 부담하실 비용은 없습니다.

신소외계층 정보화교육

- 1.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2. 지원내용**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홈페이지 제작법 등 집합·방문 정보화 교육(무료)을 지원합니다.
※ 집합 정보화교육(3~12월), 방문 정보화교육(3~11월)
- 3. 지원(신청)절차**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문의 후 신청
- 4.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02-2013-8710, www.itstudy.or.kr)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 2. 지원내용**
언어발달 정도 평가 후 어휘, 대화, 읽기 등 언어발달 촉진교육을 제공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 다누리앱을 통해 인근센터 확인
- 4.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1. 지원대상**
 -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성장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 방문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 방문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2. 지원내용**
 -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녀생활서비스 :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를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자녀생활서비스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신청)
- 4.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앱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 2. 지원내용**
 -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이용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합니다.
 - 체류 관련 정보 제공, 임신 및 출산과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 다누리앱을 통해 인근센터 확인
- 4.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앱

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

- 1. 지원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
- 2. 지원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총 300만원의 인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지원금 지급 방식은 센터별로 상이)
- 3. 지원(신청)절차**
거주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 1. 지원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
- 2. 지원내용**
결혼이민여성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을 제공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거주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 2. 지원내용**
한국 생활정보, 통역(3자 통화 가능), 갈등해결 상담, 폭력피해 긴급 지원을 365일 24시간 제공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다누리콜센터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앱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 1.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2. 지원내용**
일시보호, 상담, 의료, 법률, 출국 및 취업 등을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다누리콜센터 상담 후 신청, 경찰서 연계 등
- 4.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 2.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취업교육 및 연계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멘토링, 자조모임 등을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 다누리앱을 통해 인근센터 확인
- 4.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앱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 1.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지원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처**
 - 가정폭력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5)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1.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
- 2. 지원내용**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비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에 청구
- 4.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memo

성폭력 피해자 지원

- 1.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 2.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피해발생 →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상담, 서비스연계 → (성폭력 피해상담소) 상담지원 → (전담의료기관) 의료지원 → (무료법률구조기관) 법률지원 → (통합지원센터) 수사지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보호·사회복귀지원
- 4.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인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주요정책 > 정책자료실 > 인권보호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검색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 심터 (특별지원시설) 운영 지원

- 1. 지원대상**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2. 지원내용**

구분	지원세부내용
심리·정서적 지원	개인상담, 심신단련프로그램, 권리찾기교육, 전문심리치료기관 연계 등
수사·법적 지원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의료적 지원	치료동행, 치료비지원, 의료기관연계 등
학교문제 지원	전학문제, 지도교사면담 등
자립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연계, 퇴소 후 거주지알선 등
기타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등

- 3. 지원(신청)절차**
성폭력피해상담소,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여성긴급전화를 통한 문의 후 이용 신청
- 4.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인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상담소,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2. 지원내용

-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의 피해신고·상담, 임시보호, 의료 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직업훈련, 피해회복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가정폭력피해발생 →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상담, 서비스연계 →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지원 → (의료기관) 의료지원 → (무로법률구조기관) 법률지원 → (경찰) 수사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사회복귀지원

4.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1.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자

2. 지원내용

- 폭력피해자에 대한 긴급 상담과 구조를 지원합니다.
-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병원,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에 연결해드립니다.
-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여성긴급전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상담

4.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womenhotline.or.kr)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지원

1. 지원대상

아동여성안전 (광역 17개, 기초 226개)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내 의료, 교육, 사법, 아동여성보호관련 단체 및 시설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력체계

2. 지원내용

전국 243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에 분기별로 운영비 교부

4. 문의처

- 해당 지자체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http://safenet.mogef.go.kr>)

알려드립니다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기능 및 역할은?

- 협력체계 구축
 - 아동·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
 - 아동·여성안전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예방지원
 -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 지역 내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 안전사업
 - 안전진단 및 안전지원(안전귀가 등)
 -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위험환경 정비
 - 취약아동·여성보호지원
- 위기관리
 - 폭력위기 및 피해아동·여성 사례개입 및 관리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및 가족, 사업주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1. 지원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2. 지원내용

구분	지원세부내용
요양 급여	4일 이상 요양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검사·약제, 수술 및 치료비, 보조기 등을 지급
휴업 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
장해 급여	장해급여 : 치료를 마친 후 몸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보상연금 : 1급(평균임금 329일분) ~ 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 1급(평균임금 1,474일분) ~ 14급(55일분)
유족 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 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 (평균임금x365)의 52~67% •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간병 급여	산재로 인한 상병 치료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의비(평균임금 120일분), 직업훈련지원비 등 지급

알려드립니다

● 장해란?

-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도 영구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각 산재보험급여 신청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1. 지원대상

- 산재장해인(제1~7급), 상병보상연금수령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5년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2. 지원내용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보상부에 신청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memo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 지원대상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산재장해인(제1~9급), 상병보상연금수령자,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기준 364만 915원) 이하인 자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환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2. 지원내용

1세대당 2,000만원까지 각 융자종류별 한도 이내에서 대출해 드립니다.

구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	차량구입	사업자금
융자액	1,000만원			1,500만원			

※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지원(신청)절차

-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방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주 하는 질문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요양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를 함께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산재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케어센터 : 60세 이상의 1~3급 산재장해인
- 태백케어센터 :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2. 지원내용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해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케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입소 신청

4. 문의처

- 경기케어센터(☎031-359-0515)
-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1. 지원대상

산재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재장해인 등

2. 지원내용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의학적 조치를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1. 지원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
- 2. 지원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 직업훈련비용 : 1인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 금액을 훈련생에게 지급
- 3. 지원(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 1. 지원대상**
 - 원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제1급~제12급)
 -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2. 지원내용**
 - 근로자 : 직장복귀에 필요한 정보, 작업능력평가 및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 : 직장복귀지원금(월 30~60만원, 최대 12개월), 직장적응 훈련비(월 45만원, 최대 3개월), 재활운동비(월 15만원, 최대 3개월)를 지급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직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 1. 지원대상**
직업훈련 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
- 2. 지원내용**
임대점포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연 이율 2%, 최장 6년까지 지원, 월세 200만원 이내
- 3. 지원(신청)절차**
창업점포 예정지 관할 지사에 방문 신청
-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 1. 지원대상**
산업재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
- 2. 지원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재활멘토링,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등을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보험 요양급여 (재활보조 기구)

1. 지원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2. 지원내용

재활보조기구 204개 품목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을 지급해드립니다.

- 재활보조기구 109개 품목(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 90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품목 19개)
- 수리료 95개 품목
 - ※ 재활보조기구 요양 종결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 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 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로 인하여 통원치료 시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3. 지원(신청)절차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 및 지역본부 재활보상부에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memo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1.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중 월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

2. 지원내용

-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차등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 :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 ※ 신규가입자란 최초 가입자,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 단절된 자(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를 말함
 - 기가입자 :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 기가입자란 시행일 현재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자, 3년 이내 한 번이라도 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한 번이라도 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함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 전월 보험료 완납 및 지원신청 → (공단) 지원대상 확정 →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4.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 ☎1355, www.nps.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자주 하는 질문

- 4대 보험 모두 지원 되나요?
- 4대 보험 중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보험과 국민 연금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원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지원 신청이 있어야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 지원내용

건강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보험료 경감 22%(복지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최대 28%(농식품부)
 - ※ 소득·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최대 50%까지)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

-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4.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memo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2. 지원내용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월 최대 40,950원)

3. 지원(신청)절차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공단 지사에 신고(제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 신고(제출) 생략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자*,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기관간 자료연계를 통해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문의처

국민연금공단(☎1355)

농업인 안전보험

1. 지원대상

만 15~87세(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해당 농림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사업자)

2. 지원내용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림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4. 문의처

NH농협생명(☎1544-4000), KB손해보험(☎1544-0114)

취약농가 인력지원 (행복나눔이)

1. **지원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취약가구 및 읍·면 소재 경로당
2. **지원내용**
연간 최대 12일, 경로당은 최대 24일까지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1일, 12,000원)를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
4. **문의처**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635)

memo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 ### 1. 지원대상
-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으로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최근 3개월 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한함)
- ### 2. 지원내용
-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1일 인건비 6만원 중 4만 2천원(70%) 지원)
- ### 3. 지원(신청)절차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 진단서(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 4. 문의처
-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635)

memo

[illegible]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1.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 주민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2. 지원내용

단독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비를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해드립니다.

※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최대 2억원 이내, (증축·리모델링 등) 1억원 이내

※ 1년 거치 후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분할상환

※ 주택(주거용)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가 150㎡ 미만인 건축물

3. 지원(신청)절차

신청인이 해당 시·군·구에 사업대상자 신청(연중) → 사업대상자 선정(다음해 2월) → 해당 농협과 융자금모 및 시기 등 협의 → 주택 건축 및 완료 → 융자금 대출

4. 문의처

- 정책·제도 : 농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9)
-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해당 시·군·구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담당자
- 융자금 대출 : 해당 시·군·구 농협담당자

memo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1. 지원대상

농업인(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포함),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예) 2헥타르 이하 농지 소유(또는 임차)한 농업인, 20톤 이하 어선 소유 또는 어업인으로 종사하는 자, 10헥타르 이하의 산림과 토지를 소유(또는 임차)한 임업인 또는 일정규모 이하의 양축인 등

2. 지원내용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이자('16년은 2.59%) 및 저축장려금¹ 지급, 비과세 이자소득을 적용합니다.

* 저소득 농어민은 연 6.0~9.6%, 일반 농어민은 연 1.5~2.5%('16년 기준)

3. 지원(신청)절차

농·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신청

4. 문의처

- 농협 고객센터(☎1588-2100)
- 수협 고객센터(☎1588-1515)
- 산림조합(☎02-3434-7222)

자주 하는 질문

- **농림어업인이나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 저축가입대상이라도 타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이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농지를 소유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 결혼으로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저축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 **내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는 없으나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하시려는 분 명의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소유(또는 임차)한 농지가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1. 지원대상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지원내용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해 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여객선 승선 시 주민등록증 제시
4. 문의처
해양수산부(☎044-200-5773~4)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

1. 지원대상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본인부담 보험료를 최대 71%까지 지원합니다.
※ 위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수협은행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수협은행(☎1588-4119)

알려드립니다

- 4톤 이상 어선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 당연가입 대상 어선이 수협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게을리 할 경우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1. 지원대상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읍·면)에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희망하는 시설 위탁운영자
2. 지원내용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운영비를 지원 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업희망자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지자체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4.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1580)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 수당

1. 지원대상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 지원내용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어린이집에서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지원해 드립니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1. 지원대상

의사자 유족 또는 의사자와 그 가족

2. 지원내용

- 구조행위를 한 해의 지급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및 의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그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의뢰,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또는 사고발생지 시·군·구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 → 시·군·구에서 사실확인 후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 청구 → 시·도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의위원회) → 심사의결 → 결과통보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1.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2. 지원내용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연금특례*를 지원합니다.

* 연금특례 : 보호결정 당시 만 50~60세 미만인 자는 60세 이후 가입 기간이 5년이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생계급여·의료급여 : 시·군·구청
-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1355)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1.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2.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정착기본금 700만원(1인 가족 기준)을 지급합니다.
- 이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 장려금 등 최대 2,51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430)

탈북학생 교육 지원 (멘토링 지원 등)

1. 지원대상

초·중등학교 재학 탈북학생(북한, 제3국 출생)

2. 지원내용

탈북학생의 학습지도, 사회·문화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하고 남북한 언어 차이 학습을 위한 탈북학생용 문해력 증진 교재**를 보급합니다.

* 1인당 80만원 상당 교육 지원('16년 기준)

** 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중등학교용(총 3종)

3. 지원(신청)절차

자녀의 담임선생님에게 직접 신청

4. 문의처

-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2-3414-0111)

자주 하는 질문

●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탈북학생 멘토링과 탈북학생용 문해력 증진 교재 지원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문의해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학력인정 등)

1.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2. 지원내용

- 북한 학력을 국내 학력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 장학금, 학습지원, 진로 및 진학상담, 법률제도, IT 등 교육을 돕습니다.

3. 지원(신청)절차

통일부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학력 인정 : 통일부(☎02-2100-5785)
- 그 외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577-6635)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1.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2. 지원내용

-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특례 입학에 지원합니다.
- 중·고 및 국립대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고, 사립대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50% 보조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3-440-3653)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1.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고용지원금(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4년간 지급합니다. ※ '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탈북민에게 적용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가 통일부 하나원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하나원(☎031-670-9323)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미래행복통장)

- 1. 지원대상**
'14.11.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탈북민 중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중인 근로소득자
- 2. 지원내용**
탈북민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02-3215-5881~4)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 1.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 2. 지원내용**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를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해 1인 세대 기준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430)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노숙인, 석면피해자,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피해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노숙인 등 복지지원

- 1. 지원대상**
노숙인 시설(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
※ 기존 국고지원 시설에 한함
- 2. 지원내용**
 - 주거, 급식, 의료, 고용 등 노숙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자활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석면피해자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1. 지원대상

석면광산, 석면공장 인근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 및 유족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지원내용

피해안정질병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 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33만 6,860원	252만 4,560원	3천 786만 8,400원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96만 2,540원		1천 893만 4,200원
석면폐증	1급			
	2급			64만 1,690원
	3급	32만 840원		631만 1,400원

※ 모든 석면질병의 요양급여(치료비) 지원(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 121~509만원 한도)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 석면피해구제 홈페이지(www.adrc.or.kr)

memo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1. 지원대상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

※ 사할린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는 2세로 통칭

2. 지원내용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매월 7만 5천원)를 지급합니다.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대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을 지원합니다.(2인 1가구 기준단가 17,700천원)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비용을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 1세·2세 항공료(실비) 및 집기비품(1,400천원)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복지부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9)

알려드립니다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이란?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외교부(대한적십자)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지원

- 지원대상**
원폭피해자
- 지원내용**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 진료비 : 건강수첩 소지자는 30만원 초과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전액, 건강수첩 미소지자는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 진료보조비 : 매월 10만원(분기별 지급),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원 지원
 - 장제비 : 150만원 일시 지급
- 지원(신청)절차**
대한적십자사에 문의 후 신청
- 문의처**
대한적십자사(☎02-3705-378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 지원대상**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내용**
신규등록시에는 특별지원금으로 4,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며, 이후 매월 생활안정지원금(129만 8천원 지원, '17년 기준)과 간병인 필요 시 실비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기준 관할 광역 시·도에 신청
- 문의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02-2100-6427~6433, www.hermuseum.go.kr)

진폐근로자 보호

-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및 진폐 장해 판정 근로자
 - 지원내용**
근로자의 진폐 건강진단 및 위로금, 자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 구분 | 지원내용 |
|--------------|---|
| 진폐 건강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폐건강 진단 비용 실비 지원 정밀건강진단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 지급 |
| 진폐 위로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산재보험 장해일 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
|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 지원(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신청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한센인 피해자 지원

- 지원대상**
한센인 피해자 본인
- 지원내용**
 - 피해자별 상병 내용에 따라 향후 치료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급합니다.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개발제한 구역 생활비용 보조

- 1.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 2. 지원내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를 세대당 연간 60만원 지급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신청인이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지원대상자 결정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 4. 문의처**
주민센터(보건복지콜센터 ☎129)

알려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은?**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
- **지원대상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로서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memo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 1.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노숙인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2. 지원내용**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일정 범위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료 등 총 진료비 90% 지원(1회 500만원 범위 내)
- 3. 지원(신청)절차**
각 시·도 의료지원사업 담당부서 및 사업수행의료기관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은?**
 - 동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을 하며,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단,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풍수해보험

1. 지원대상

주택 소유자·세입자 또는 온실 소유자

2. 지원내용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55~86% 지원
※ 일반 55~62%, 차상위 76%, 기초 86%

3. 지원(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통해 가입
- 개인이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에서 직접 가입
※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사로 국비 교부

4. 문의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 동부화재(☎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02-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02-2100-5106,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1644-9000)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알려드립니다

●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했을 경우

2. 지원내용

- 치료비 : 5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심리치료비 : 정신과 치료비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제공합니다.
- 생계비 : 매달 범죄피해자 1인 50만원, 2인 가족 80만원, 2인 초과하는 가족의 경우 1인당 20만원씩 증액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 학자금 : 초등학교 50만원, 중학교 80만원, 고등학교·대학교 100만원을 학기당 1회씩 최대 연2회 지원합니다.
- 장례비 :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300만원을 상한으로 실비를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검찰청에 직접 신청 또는 경찰·군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
→ 검찰청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

4.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 지원대상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지원내용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 14개를 포함하여 지자체별로 약 470여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3. 지원(신청)절차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등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하면, 상담 및 욕구조사(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득조사(시·군·구)를 통해 이용자 선정·통지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memo



복지서비스 찾아보기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고 싶으신가요?

-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
-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 서비스 목록
- 가나다순 서비스 목록
- 주요기관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콜센터(☎129) • 주거급여 : 콜센터(☎1600-0777), 마이홈(☎1600-1004)	20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한국전력공사(☎123) 등	23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지원제도	보건복지콜센터(☎129)	24
	가족역량강화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26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26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27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27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28
	행복주택 공급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28
	장기전세주택 임대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31
	기존주택 매입임대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32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흥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3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LH공사(☎1600-1004)	34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LH공사(☎1600-1004)	34
	주거환경 개선자금	국토교통부(☎1599-0001), 우리은행(☎1588-5000)	35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콜센터(☎1600-0777), 마이홈(☎1600-1004)	37
	슬레이트 처리 지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37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그린홈)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38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38
	신재생에너지 지원	한국에너지공단(☎031-260-4114)	39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한국에너지공단(☎031-260-4337)	39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	40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306)	4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21)	42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시)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3
	보증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보증금 대출시)	국토교통부(☎1599-0001)	44
	버팀목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4
	주거안정 월세대출 (순수 월세 대출시)	국토교통부(☎1599-0001)	45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5
	전세자금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6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근로복지공단(☎1588-0075)	47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근로복지공단(☎1588-0075)	48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근로복지공단(☎1588-0075)	49
	미소금융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50
	햇살론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51
	바꿔드림론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52
	새희망홀씨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한국이자리(☎1644-1110)	53
	소상공인지원(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54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55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	55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56
	양곡할인	보건복지콜센터(☎129)	57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랑의 그린PC 상담전화(☎1588-2670)	58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 하고 싶을 때	통합문화이용권	• 카드 사용 일반 : 문화누리카드콜센터 (☎1544-3412) • 수령등록 및 분실신고 : NH농협카드콜센터 (☎1644-4000)	59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042, 4026)	60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60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4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5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6
	자활근로	보건복지콜센터(☎129)	67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워크넷(☎1350)	67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1588-3249)	68
	희망키움통장(I, II)	보건복지콜센터(☎129)	69
	내일키움통장	보건복지콜센터(☎129)	70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126)	70
	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126)	71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72
여성이 기업 운영을 원할 때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73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34)	7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10)	75
	여성창업 경진대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11)	76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7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8
	장년고용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9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사업	K-스타트업(☎1367)	80
	사회공헌활동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81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82
	청년취업 아카데미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2)	83
	해외취업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84
	일학습병행제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86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86
임산·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취업사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8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90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보건복지콜센터(☎129)	91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91
	영양플러스	보건복지콜센터(☎129)	92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보건복지콜센터(☎129)	9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93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콜센터(☎129)	94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94
	요양비(출산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95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공단(☎1355)	9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96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97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98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9
	육아휴직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0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비정규직 재고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0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0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02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02-2670-0411~25), 부산(☎051-320-8182~7), 대전(☎042-870-9111~6)	103
	만 0~5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104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에듀콜센터(☎1544-0079)	105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06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129), 아이돌봄서비스상담전화(☎1577-2514)	107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건복지콜센터(☎129)	108
	시간제 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콜센터(☎1661-9361)	108
	입양아동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09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109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110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콜센터(☎129)	111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보건복지콜센터(☎129)	11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12
	영양플러스	보건복지콜센터(☎129)	11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13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114
	영유아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15
	만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15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	보건복지콜센터(☎129)	116
	취학전 아동 단체 불소 도포	보건복지콜센터(☎129)	116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초등 돌봄교실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	117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02-330-2831~34)	118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고교학비 지원	교육부(☎1544-9654)	119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부(☎1544-9654)	120
	급식비 지원	교육부(☎1544-9654)	120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교육부(☎1544-9654)	121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129)	122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셋째아이이상))	한국장학재단(☎1599-2000)	123
	국가 교육 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4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5
	예술체육비전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6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000)	126
	인문100년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7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128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129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000)	130
	학교유유급식	소속 학교	131
	아동급식지원(지방이양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13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속 학교	132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	133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134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35
	아동발달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지원단(☎02-790-0786), 보건복지콜센터(☎129)	135
	드림스타트	보건복지콜센터(☎129)	136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136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031-333-1740)	137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전화(☎1388)	138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전화(☎1388)	13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전화(☎1388)	140
	청소년 성문화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02-3144-1223)	141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여성긴급전화(☎1366)	14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및 해소지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 청소년전화(☎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91~5)	142
	Wee클래스·Wee센터· Wee스쿨 상담지원	Wee 프로젝트 특임센터(☎043-530-9182, 9184)	143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아동· 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_Net)	청소년전화(☎1388)	144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전화(☎1388)	144
	청소년심터 운영지원	청소년전화(☎1388)	14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환경안전진단 콜센터(☎1800-0490)	146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킹 (☎02-330-2892, 2896, 2898)	147
	청소년활동 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00)	149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50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02-722-2585)	152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56
	건강보험 차상위	보건복지콜센터(☎129)	157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043-719-7409, 7433)	158
	의료급여 산정특례 제도	보건복지콜센터(☎129)	159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160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 하기 힘들 때	의료급여제도	보건복지콜센터(☎129)	161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보건복지콜센터(☎129)	162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콜센터(☎129)	163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163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보건복지콜센터(☎129)	164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을 때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보건복지콜센터(☎129)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보건복지콜센터(☎129)	16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66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67
질병의 조기 발견을 원할 때	국가건강검진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68
건강 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17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170
	재가암 관리	전국 보건소	17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콜센터(☎129)	171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172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1577-1000)	173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74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콜센터(☎129)	178
	노후준비지원 서비스	국민연금공단(☎1355)	179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국민연금공단(☎1355)	179
	주택연금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180
	은퇴금융 아카데미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181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노인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82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183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183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02-704-4332)	184
	고령층 정보화 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정보화 교육 (☎053-230-1392)	184
	온라인 정보화 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민정보화 교육 (☎053-230-1114)	185
치매가 걱정될 때	치매검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186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187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노인실명 예방	보건복지콜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188
	노인틀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189
	노인치과임플란트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190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19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129)	192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보건복지콜센터(☎129)	193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129)	193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긴급신고전화(☎110),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194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코레일(☎1544-7788) 등	195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	장애연금	보건복지콜센터(☎129)	200
	장애수당	보건복지콜센터(☎129)	202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콜센터(☎129)	203
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04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04
	장애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05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05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콜센터(☎129)	206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건복지콜센터(☎129)	20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07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07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교육부(☎044-203-6954)	208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08
장애인이 교육을 기회를 원할 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교육부(☎044-203-6562)	209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044-203-6560)	209
	장애인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210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211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2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4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15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용자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6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7
장애인이 사회 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콜센터(☎129)	219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220
	장애인 창업교육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21)	221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20)	222
	근로지원인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22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보건복지콜센터(☎129)	224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5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5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6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도우미(☎1588-2670)	227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28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29
	장애인 보장구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229
	장애검사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30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30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구센터(☎1670-5529)	231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3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32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129)	233
	언어발달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3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3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보건복지콜센터(☎129)	235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235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장애인 활동지원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콜센터(☎129)	236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보건복지콜센터(☎129)	237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LH공사(☎1600-1004)	237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238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보건복지콜센터(☎129)	238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3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39
	무료 법률 구조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240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청각장애인용 TV)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240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24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보건복지콜센터(☎129)	241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	242
장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을 때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국세청 콜센터(☎126)	243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행정자치부 콜센터(☎02-2100-3399)	244
	상속세 상속공제	국세청 콜센터(☎126)	245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국세청 콜센터(☎126)	245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세청 콜센터(☎126)	245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건복지콜센터(☎129)	246
	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콜센터(☎129)	246
	장애인 체육시설	보건복지콜센터(☎129)	247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02-2092-0001, 0088)	247
	수화통역센터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247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각종 요금 감면혜택을 받고 싶을 때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등	248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일 때 (보훈 급여금 지원)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2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2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3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3
	무공영예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4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4
	영주귀국 정착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5
	재해보상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6
	재해위로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7
	6.25자녀 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7
	고엽제환자 2세 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8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8
	참전명예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8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9
	재가복지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0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1
	보훈요양원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1
	국가유공자 등 양로지원	보훈원(☎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2
	국가유공자 등 양육지원	보훈원(☎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2
	보훈병원진료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3
	위탁병원진료 (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4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5
	교통시설 이용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5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국민은행(☎1599-9999), 농협은행(☎1588-2100),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6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6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7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일 때 (교육비 지원)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8
	장기복무제대군인 대부지원	국민은행(☎1599-9999), 농협은행(☎1588-2100)	268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	269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0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2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보조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3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위기가족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276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부산 건강가정지원센터(☎051-330-3472) 등	277
	미혼모·부 초기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278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279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1544-9654)	280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주택분양 임대)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1600-1004) • 공동생활가정형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28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281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서비스	양육비 상담전화(☎1644-6621)	281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282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문화 가족 지원)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83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LH공사(☎1600-1004)	28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콜센터(☎129) • 주거급여 : 콜센터(☎1600-0777), 마이홈(☎1600-1004)	284
	긴급복지지원제도	보건복지콜센터(☎129)	284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85
	북한이탈 및 다문화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02-2100-6280),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02-722-2585)	285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한국장학재단(☎1599-2000)	286
	신소외계층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02-2013-8710)	28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누리콜센터(☎1577-1366)	28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누리콜센터(☎1577-1366)	287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누리콜센터(☎1577-1366)	288
	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288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289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콜센터(☎1577-1366)	289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다누리콜센터(☎1577-1366)	29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다누리콜센터(☎1577-1366)	290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291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92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93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 쉼터(특별지원시설) 운영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9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94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여성긴급전화(☎1366)	294
	아동여성안전지원연대 운영 지원	해당 지자체	295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근로복지공단(☎1588-0075)	296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근로복지공단(☎1588-0075)	297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1588-0075)	298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경기케어센터(☎031-359-0515),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299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	299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근로복지공단(☎1588-0075)	300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300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301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301
	산재보험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근로복지공단(☎1588-0075)	302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303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30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1355)	305
농어업인 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업인 안전보험	NH농협생명(☎1544-4000), KB손해보험(☎1544-0114)	305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635)	306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635)	307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 정책·제도 :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9) • 사업 신청 : 해당 시·군·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담당자 • 융자금 대출 : 해당 시·군·구 농협 담당자	308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농협 고객행복센터(☎1588-2100), 수협 고객만족센터(☎1588-1515), 산림조합(☎02-3434-7222)	309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해양수산부(☎044-200-5773~4)	31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수협은행(☎1588-4119)	310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농림축산식품부(☎044-201-1580)	311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보건복지콜센터(☎129)	311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312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 서비스 목록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생계·의료급여 : 시·군·구청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1355)	31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430)	313
	탈북학생 교육 지원 (멘토링 지원 등)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2-3414-0111)	314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학력인정 등)	•학력 인정 : 통일부(☎02-2100-5785) •그 외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77-6635)	315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3-440-3653)	315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하나원(☎031-670-9323)	315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 (☎02-3215-5881~4)	316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430)	316
	노숙인 등 복지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317
	석면피해자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318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319
	원폭 피해자 지원	대한적십자사(☎02-3705-3783)	32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02-2100-6427~6433)	320
	진폐근로자 보호	근로복지공단(☎1588-0075)	321
	한센인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321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보건복지콜센터(☎129)	322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323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	풍수해보험	동부화재(☎02-2100-5103, ☎1588-0100), 현대해상(☎02-2100-5104, ☎1588-5656), 삼성화재(☎02-2100-5105, ☎1588-5114), KB손해보험(☎02-2100-5106, ☎1544-0114),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1644-9000)	324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325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326

임신·출산

구분	사업명	페이지
임신준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0
임신기간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98
	영양플러스	92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91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9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93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17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94
출산비지원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91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95
	여성장래인 출산비용 지원	204
	요양비(출산비) 지원	95
출산이후	출산비용 지원	94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1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96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11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111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01
	육아종합지원센터	109
	육아휴직 급여 지원	100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9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	10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10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02
생활지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99
	간급복지지원제도	24

영유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육비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06
	가정위탁아동 지원	135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283
	만 0~5세 보육료 지원	104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05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08
	시간제 보육 지원	108
	장애아동수당	203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206
	장애아동 양육수당	206
	장애아 보육료 지원	205
건강	국가건강검진 제도	168
	건강보험제도	156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14
	만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12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166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111
	언어발달 지원	234
	영양플러스	112
	영유아 건강검진	115
	취학전 아동 단체 불소 도포	116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	116

영유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10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311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33
	아이돌봄서비스	107
	육아종합지원센터	10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07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03
입양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97
	입양아동 지원	109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204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232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온라인 정보화 교육	18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13
	통합문화이용권	59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

아동·청소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육비지원	장애아동수당	203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206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79
건강	국가건강검진 제도	168
	건강보험제도	156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14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166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및 해소지원	142
교육	고교학비 지원	119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121
	급식비 지원	12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20
	스포츠강좌이용권	60
	온라인 정보화 교육	185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205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211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15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_Net)	144
	지역아동센터 지원	1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18
	초등 돌봄교실	117
	학교우유급식	131
교육_역량강화	청소년 국제교류	147
	청소년 특별지원	139
	청소년활동 지원	149

아동·청소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호(돌봄·안전)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3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07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45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34
입양	가정위탁아동 지원	135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97
	입양아동 지원	109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204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232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136
	통합문화이용권	59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
자립	드림스타트	136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35
심리지원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상담지원	143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141
	청소년 성문화센터	141
	청소년전화 1388	144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137
특수상황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138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28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40

청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교육	국가 교육 근로장학금	124
	국가장학금[I,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이상)]	123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125
	예술체육비전장학금	126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26
	인문100년장학금	127
교육 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30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129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28
고용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86
	내일배움카드제	66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73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75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74
	여성창업 경진대회	76
	일학습병행제	86
	청년내일채움공제	82
	청년취업 아카데미	83
	취업사관학교	87
	취업성공패키지	65
	해외취업지원	84
주거	기존주택 매입임대	32
	기존주택·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3
	행복주택 공급	28
주거 대출	버팀목대출 보증	4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보증금 대출시)	44
	전세자금 보증	46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45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시)	45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
건강	국가건강검진 제도	168
	건강보험제도	156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165

중장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	공공산림가꾸기	68
	내일배움카드제	66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72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73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75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74
	여성창업 경진대회	76
	사회공헌활동 지원	81
	임금피크제 지원금	78
	장년고용 지원금	79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67
	취업성공패키지	65
생활지원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48
	근로장려금	70
	긴급복지지원제도	24
	자녀장려금	71
주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
	국민임대주택 공급	27
	기존주택 매입임대	32
	기존주택·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3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28
	영구임대주택 공급	27
	장기전세주택 임대	31
주거 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시)	43
	버팀목대출 보증	4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보증금 대출시)	44
	보증자리론	43
	전세자금 보증	46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시)	45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45
교육	온라인 정보화 교육	185
건강	국가건강검진 제도	168
	건강보험제도	156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165
기타	노후준비지원 서비스	179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277

노령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기초연금제도	178
	긴급복지지원제도	24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179
	노후준비지원 서비스	179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195
	은퇴금융 아카데미	181
	주택연금제도	180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
건강	국가건강검진 제도	168
	건강보험제도	156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158
	노인실명 예방	188
	노인틀니 지원	189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193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91
	성인암환자 의료비지원	165
	노인치과임플란트 지원	190
	치매검진 지원	186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87
고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77
	공공산림가꾸기	68
	노인 사회활동 지원	182
	사회공헌활동 지원	81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사업	80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67

노령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주거	국민임대주택 공급	27
	기존주택 매입임대	32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28
	영구임대주택 공급	27
	장기전세주택 임대	31
	행복주택 공급	28
주거 대출	내집 마련 디딤대출(주택구입시)	43
	버팀목대출 보증	4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보증금 대출시)	44
	보증자리론	43
	전세자금 보증	46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45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시)	45
돌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9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92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19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7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73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306
사회참여	고령층 정보화 교육	184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183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83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184
	온라인 정보화 교육	185

장애인

구분	사업명	페이지
건강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34
	발달재활서비스	233
	장애검사비 지원	230
	장애인 의료비 지원	228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23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232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209
양육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207
	아이돌봄서비스	107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07
	장애아동수당	203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206
	장애아동 양육수당	206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204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205
	장애아 보육료 지원	205
교육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20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239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청각장애인용 TV)	240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208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242
	장애인 정보화교육	210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211
주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238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237

장애인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무료 법률 구조제도	240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24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43
	의료급여제도	161
	장애수당	202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239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229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230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45
	상속세 상속공제	245
	장애인연금	200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244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248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241
돌봄 (안전·활동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1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45
	보조공학기기 지원	226
	수화통역센터	24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237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208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238
	장애인 보장구 급여	229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231
	장애인 복지관	246

장애인

구분	사업명	페이지
돌봄 (안전·활동지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247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23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46
	장애인 체육시설	247
	장애인 활동지원	236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227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3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170
임신·출산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5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4
	출산비용 지원	94
고용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225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용자지원	216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220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225
	장애인 일자리 지원	215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2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224
	장애인 창업교육	221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222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218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21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224

한부모

구분	사업명	페이지
양육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서비스	281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79
교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32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282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280
주거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28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281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84
	의료급여제도	161
돌봄 (안전·활동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26
	미혼모·부 초기지원	278

다문화·북한이탈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84
	다누리콜센터(1577-1366)	289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31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313
	의료급여 제도	161
기타생활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288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85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31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290
보육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283
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28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28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290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286
	북한이탈 및 다문화청소년 지원	285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315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315
	사랑의 그린PC 보급	58
	신소외계층 정보화교육	28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152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314
고용	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	288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289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315
주거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283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316

저소득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건강보험 차상위	157
	근로장려금	70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23
	긴급복지지원제도	2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60
	양곡할인	57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162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63
	의료급여제도	161
	자녀장려금	71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136
자금대여	통합문화이용권	59
	새희망홀씨	53
출산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47
	출산비용 지원	94
건강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63
	재가암 관리	171
교육	고교학비 지원	11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32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121
	급식비 지원	120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2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20
	사랑의 그린PC 보급	58
	스포츠강좌이용권	60
	아동급식지원(지방이양사업)	132
	학교우유급식	131

저소득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	자활근로	67
	취업성공패키지	65
자립	내일키움통장	70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35
	희망키움통장(I, II)	69
주거	기존주택 매입임대	32
	기존주택·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3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28
	영구임대주택 공급	27
	장기전세주택 임대	3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34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34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41
주거환경 개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38
	슬레이트 처리 지원	37
	에너지바우처	40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3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42
	주거환경 개선자금	35
돌봄 (안전·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56
	가족역량강화지원	26

교육

구분	사업명	페이지
미취학	가정양육수당 지원	106
	가정위탁아동 지원	135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311
	만 0~5세 보육료 지원	104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05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08
	시간제 보육 지원	108
	아이돌봄서비스	107
초·중·고	고교학비 지원	119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121
	급식비 지원	120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22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20
	사랑의 그린PC 보급	58
	지역아동센터 지원	118
	초등 돌봄교실	117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314
	학교우유급식	131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280
장애인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209
	언어발달 지원	234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208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208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205
	장애아 보육료 지원	205

교육

구분	사업명	페이지
장애인	장애인 정보화교육	210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21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209
노인	고령층 정보화 교육	184
다문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28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287
	신소외계층 정보화교육	286
기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3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146
	온라인 정보화 교육	185
	일학습병행제	86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보조	273
장학금	국가 교육 근로장학금	124
	국가장학금[I,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이상)]	123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125
	예술체육비전장학금	126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26
	인문100년장학금	127
대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30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129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28

고용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77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72
	사회공헌활동 지원	81
	자활근로	67
	장년고용 지원금	79
	장애인 일자리 지원	215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67
	청년내일채움공제	82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214
	해외취업지원	84
노인	노인 사회활동 지원	182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사업	80
취업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86
	내일배움카드제	66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300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300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268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212
	직업능력 개발지원	21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22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224
	청년취업 아카데미	83
	취업사관학교	87
	취업성공패키지	65
자립	내일키움통장	70
	희망키움통장(I,II)	69
고용안정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대부	48
	근로장려금	70

고용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안정	근로지원인 지원	223
	실업급여	6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75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74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3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01
	육아휴직 급여 지원	100
	일학습병행제	86
	임금채불 생계비 대부	47
	임금피크제 지원금	78
	자녀장려금	71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22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225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30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4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	10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10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02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99
창업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301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사업	80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73
	여성창업 경진대회	76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220
	장애인 창업교육	221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222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지원	216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218

주거

구분	사업명	페이지
주거	국민임대주택 공급	27
	기존주택 매입임대	32
	기존주택·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3
	긴급복지지원제도	24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28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28
	영구임대주택 공급	27
	장기전세주택 임대	31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23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34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34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280
	행복주택 공급	28
주거 수리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38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41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38
	슬레이트 처리 지원	37
	신재생에너지 지원	39
	에너지바우처	40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3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42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37
	주거환경 개선자금	35
주거 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시)	43
	버팀목대출 보증	4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보증금 대출시)	44
	보증자리론	43
	전세자금 보증	46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시)	45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45
주거 보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238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23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4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29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281

건강

구분	사업명	페이지
의료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292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9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0
	만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15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12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11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164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165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166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323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162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63
	의료급여 산정특례 제도	159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232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및 해소지원	14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66
건강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158
	장애인 활동지원	236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170
노인 건강	노인실명 예방	188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7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73
	노인틀니 지원	189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91

건강

구분	사업명	페이지
노인 건강	노인치과임플란트 지원	190
	치매검진 지원	186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87
영유아아동 건강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14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111
	영유아 건강검진	115
	취학전 아동 단체 불소 도포	116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	116
건강증진	재가암 관리	17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7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170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심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34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	170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137

서민금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계자금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대부	48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179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98
	새희망홀씨	53
	임금채불 생계비 대부	47
	햇살론	51
주거자금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시)	43
	버팀목대출 보증	4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보증금 대출시)	44
	보증자리론	43
	전세자금 보증	46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시)	45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45
	주거환경 개선자금	35
사업자금	미소금융	50
	소상공인지원(융자)	54
고용지원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지원	216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49
학자금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30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129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28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55
	바꿔드림론	5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55
	햇살론	51

문화

구분	사업명	페이지
노인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184
아동·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60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150
	청소년활동 지원	149
	통합문화이용권	59
장애인	장애인 체육시설	247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6.25자녀 수당	257
	고엽제환자 2세 수당	258
	고엽제후유의증수당	258
	교통시설 이용 지원	265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265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272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270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271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26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252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252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253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253
	국가유공자 등 양로지원	262
	국가유공자 등 양육지원	262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지원	266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267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259
	무공영예수당	254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261
	보훈병원진료	263
	보훈요양원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261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54
	영주귀국 정착금	255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264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260
	재해위로금	257
	참전명예수당	258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대부지원	268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보조	273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268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269
의사상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312
	재해보상금	256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319
원폭피해자	원폭 피해자 지원	320
위안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320
위기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76
	미혼모·부 초기지원	278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277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29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294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292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141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 심터(특별지원시설) 운영 지원	293
	성폭력 피해자 지원	293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원	295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294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34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구분	사업명	페이지
산재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296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	30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98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297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300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300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301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299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299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302
농어업인· 도서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309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30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305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238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308
	농업인 안전보험	305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311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311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30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31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310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306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307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구분	사업명	페이지
입양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97
	입양아동 지원	109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204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232
노숙인	노숙인 등 복지지원	317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	172
중증질환· 희귀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제도	159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	16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66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85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323
결핵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167
석면피해자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318
진폐	진폐근로자 보호	321
한센	한센인 피해자 지원	321
풍수해	풍수해보험	324
알코올 등 중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71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322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325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26

가나다순 서비스 목록

가		
6.25자녀 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7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7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상담지원	Wee 프로젝트 특임센터(☎043-530-9182, 9184)	143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56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06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35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9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291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92
가족역량강화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26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보건복지콜센터(☎129)	322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276
건강보험 차상위	보건복지콜센터(☎129)	157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56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163
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288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289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누리콜센터(☎1577-1366)	288
고교학비 지원	교육부(☎1544-9654)	119
고령층 정보화 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정보화 교육(☎053-230-1392)	184
고엽제환자 2세 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8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98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043-719-7409, 7433)	158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1588-3249)	68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110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교육부(☎1544-9654)	12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속 학교	132

교통시설 이용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5
국가 교육 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4
국가건강검진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68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86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5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2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0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1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국민은행(☎1599-9999), 농협은행(☎1588-2100),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2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2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3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3
국가유공자 등 양로지원	보훈원(☎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2
국가유공자 등 양육지원	보훈원(☎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2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7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6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9
국가장학금 [I,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이상)]	한국장학재단(☎1599-2000)	123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044-203-6560)	209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공단(☎1355)	95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27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55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근로복지공단(☎1588-0075)	48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126)	70
근로지원인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3
급식비 지원	교육부(☎1544-9654)	120
기존주택 매입임대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32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33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129)	122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한국전력공사(☎123) 등	23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콜센터(☎129)	178
긴급복지지원제도	보건복지콜센터(☎129)	24
L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90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6
내일키움통장	보건복지콜센터(☎129)	70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시)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3
노숙인 등 복지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317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172
노인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82
노인실명 예방	보건복지콜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188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1000)	17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1000)	173
노인틀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189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보건복지콜센터(☎129)	19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129)	192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긴급신고전화(☎110),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194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183
노인치과임플란트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190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그린홈)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38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국민연금공단(☎1355)	179
노후준비지원 서비스	국민연금공단(☎1355)	179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농협 고객행복센터(☎1588-2100), 수협 고객만족센터(☎1588-1515), 산림조합(☎02-3434-7222)	309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30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1355)	305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238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정책·제도 : 농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9) •사업 신청 : 해당 시·군·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담당자 •융자금 대출 : 해당 시·군·구 농협 담당자	308
농업인 안전보험	NH농협생명(☎1544-4000), KB손해보험(☎1544-0114)	305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농림축산식품부(☎044-201-1580)	311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보건복지콜센터(☎129)	311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000)	130
C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콜센터(☎1577-1366)	289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83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한국장학재단(☎1599-2000)	28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누리콜센터(☎1577-1366)	28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누리콜센터(☎1577-1366)	28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다누리콜센터(☎1577-1366)	290
도서관 여행선 운임지원	해양수산부(☎044-200-5773~4)	310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183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129)	193
드림스타트	보건복지콜센터(☎129)	136
M		
만 0~5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104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114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에듀콜센터(☎1544-0079)	105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191
만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15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 : 콜센터(☎1600-0777), 마이홈(☎1600-1004)	20
무공영예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4
무료 법률 구조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240
미소금융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5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12
미혼모·부 초기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278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1
B		
바꿔드림론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5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0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39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34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129)	23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부(☎1544-9654)	120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청각장애인용 TV)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240
버팀목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보증금 대출시)	국토교통부(☎1599-0001)	44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325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부산 건강가정지원센터(☎051-330-3472) 등	277
보증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3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6
보훈병원진료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3
보훈요양원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1
북한이탈 및 다문화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02-2100-6280),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02-722-2585)	285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학력인정 등)	•학력 인정 : 통일부(☎02-2100-5785) •그 외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577-6635)	315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3-440-3653)	315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생계·의료급여 : 시·군·구청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1355)	313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02-3215-5881~4)	316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430)	313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430)	316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하나원(☎031-670-9323)	315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28
人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랑의 그린PC 상담전화(☎1588-2670)	58
사회공헌활동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81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306)	4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8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042, 4026)	6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96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근로복지공단(☎1588-0075)	296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30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1588-0075)	298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근로복지공단(☎1588-0075)	297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근로복지공단(☎1588-0075)	300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300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301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경기케어센터(☎031-359-0515),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299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	299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근로복지공단(☎1588-0075)	302
상속세 상속공제	국세청 콜센터(☎126)	245
새희망홀씨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한국이지론(☎1644-1110)	53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38
석면피해자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318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콜센터(☎129)	111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보건복지콜센터(☎129)	164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여성긴급전화(☎1366)	141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보건복지콜센터(☎129)	165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 쉼터(특별지원시설) 운영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93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93
소상공인지원(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54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보건복지콜센터(☎129)	166
수화통역센터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247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60
슬레이트 처리 지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3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24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국세청 콜센터(☎126)	243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건복지콜센터(☎129)	108
시간제 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콜센터(☎1661-9361)	108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사업	K-스타트업(☎1367)	80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보건복지콜센터(☎129)	111
신소외계층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02-2013-8710)	286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	55
신재생에너지 지원	한국에너지공단(☎031-260-4114)	39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4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	133

오		
아동급식지원(지방이양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132
아동발달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지원단(☎02-790-0786), 보건복지콜센터(☎129)	135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원	해당 지자체	295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129), 아이돌봄서비스상담전화(☎1577-2514)	107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4
양곡할인	보건복지콜센터(☎129)	57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서비스	양육비 상담전화(☎1644-6621)	281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02-704-4332)	184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코레일(☎1544-7788) 등	19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환경안전진단 콜센터(☎1800-0490)	14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수협은행(☎1588-4119)	310
언어발달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34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한국에너지공단(☎031-260-4337)	39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	40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72
여성창업 경진대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11)	76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73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34)	7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10)	75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여성긴급전화(☎1366)	29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보건복지콜센터(☎129)	237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0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04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27
영양플러스	보건복지콜센터(☎129)	92
영양플러스	보건복지콜센터(☎129)	112
영유아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15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319
영주귀국 정착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5
예술체육비전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6
온라인 정보화 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민정보화 교육(☎053-230-1114)	185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323
요양비(출산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95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5
원폭 피해자 지원	대한적십자사(☎02-3705-3783)	320
위탁병원진료 (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01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109
육아휴직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00
은퇴금융 아카데미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181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콜센터(☎129)	163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보건복지콜센터(☎129)	162
의료급여 산정특례 제도	보건복지콜센터(☎129)	159
의료급여제도	보건복지콜센터(☎129)	161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312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000)	12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02-722-2585)	152
인문100년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7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129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02-2100-6427~6433)	320
일학습병행제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86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근로복지공단(☎1588-0075)	47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8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9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93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보건복지콜센터(☎129)	92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97
입양아동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09
입원 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 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67
ㅈ		
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126)	71
자활근로	보건복지콜센터(☎129)	67
장기복무제대군인 대부지원	국민은행(☎1599-9999), 농협은행(☎1588-2100)	268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보조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73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8

장기전세주택 임대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31
장년고용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9
장애검사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30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32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교육부(☎044-203-6954)	208
장애수당	보건복지콜센터(☎129)	202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05
장애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0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07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건복지콜센터(☎129)	206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콜센터(☎129)	206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04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콜센터(☎129)	203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39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보건복지콜센터(☎129)	238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29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5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30
장애인 보장구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229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구센터(☎1670-5529)	231
장애인 생활활동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02-2092-0001, 0088)	247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	242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28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보건복지콜센터(☎129)	235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1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보건복지콜센터(☎129)	24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콜센터(☎129)	219
장애인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21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건복지콜센터(☎129)	246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LH공사(☎1600-1004)	237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 (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2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보건복지콜센터(☎129)	224

장애인 창업교육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21)	221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20)	222
장애인 체육시설	보건복지콜센터(☎129)	247
장애인 활동지원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콜센터(☎129)	236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용자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6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220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세청 콜센터(☎126)	245
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콜센터(☎129)	246
장애인연금	보건복지콜센터(☎129)	200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행정자치부 콜센터(☎02-2100-3399)	244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등	248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211
재가복지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0
재가암 관리	전국 보건소	171
재해보상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6
재해위로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1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21)	42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136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303
전세자금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6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도우미(☎1588-2670)	227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워크넷(www.work.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7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170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	269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LH공사(☎1600-1004)	283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콜센터(☎1600-0777), 마이홈(☎1600-1004)	37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5
주거안정 월세대출 (순수 월세 대출시)	국토교통부(☎1599-0001)	4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LH공사(☎1600-1004)	34
주거환경 개선자금	국토교통부(☎1599-0001), 우리은행(☎1588-5000)	35
주택연금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180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콜센터(☎129)	171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224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160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국세청 콜센터(☎126)	245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50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32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23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_Net)	청소년전화(☎1388)	144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170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18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근로복지공단(☎1588-0075)	49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02-2670-0411~25), 부산(☎051-320-8182~7), 대전(☎042-870-9111~6)	103
진폐근로자 보호	근로복지공단(☎1588-0075)	321
초		
참전명예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8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232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82
청년취업 아카데미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2)	83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02-330-2892, 2896, 2898)	147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전화(☎1388)	13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02-330-2831~34)	118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콜센터(☎129)	94
청소년 성문화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02-3144-1223)	14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및 해소지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 청소년전화 (☎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91~5)	142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전화(☎1388)	139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282
청소년심리 운영지원	청소년전화(☎1388)	145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전화(☎1388)	144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031-333-1740)	137
청소년활동 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00)	149
초등 돌봄교실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	117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9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비정규직 재고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0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0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02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9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LH공사(☎1600-1004)	34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635)	307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635)	306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128
취업성공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87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5
취학전 아동 단체 불소 도포	보건복지콜센터(☎129)	116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	보건복지콜센터(☎129)	116
치매검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186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187

E		
탈북학생 교육 지원 (멘토링 지원 등)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2-3414-0111)	314
통합문화이용권	• 카드 사용 일반 : 문화누리카드콜센터(☎1544-3412) • 수령등록 및 분실신고 : NH통합카드콜센터 (☎1644-4000)	5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교육부(☎044-203-6562)	209

II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다누리콜센터(☎1577-1366)	290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보건복지콜센터(☎129)	91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8

풍수해보험	동부화재(☎02-2100-5103, ☎1588-0100), 현대해상(☎02-2100-5104, ☎1588-5656), 삼성화재(☎02-2100-5105, ☎1588-5114), KB손해보험(☎02-2100-5106, ☎1544-0114),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1644-9000)	325
-------	---	-----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전화(☎1388)	140
학교우유급식	소속 학교	131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13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281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279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1544-9654)	280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주택분양·임대)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1600-1004) • 공동생활가정형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280
한센인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321
해외취업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84
햇살론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51
행복주택 공급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28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166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보건복지콜센터(☎129)	26
희망키움통장(I, II)	보건복지콜센터(☎129)	69

주요기관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주요기관	연락처
BC카드	☎1899-4651
KB 손해보험	☎1544-0114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K-스타트업	☎1367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공사	☎1600-1004
NH농협생명	☎1544-4000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NH농협은행	☎1588-2100
NH농협카드콜센터	☎1644-4000
SH공사	☎1600-3456
Wee 프로젝트 특임센터	☎043-530-9182, 9184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경기케어센터	☎031-359-0515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18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교육부	☎1544-9654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 지원과	☎02-901-1553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740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063-323-2285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	☎041-537-148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주요기관	연락처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은행	☎1599-9999
국세청 콜센터	☎126
국토교통부	☎1599-0001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긴급신고전화	☎110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동부화재	☎1588-0100
디딤씨앗지원단	☎02-790-0786
롯데카드	☎1899-4282
문화누리카드콜센터	☎1544-3412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훈원	☎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77-663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1566-3232, 4번
산림조합	☎02-3434-7222
산림청	☎1588-3249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	☎1577-0900
삼성카드	☎1566-3336
삼성화재	☎1588-5114

주요기관	연락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수협 고객만족센터	☎1588-1515
수협은행	☎1588-4119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시간제 보육 콜센터	☎1661-9361
시청가미디어재단	☎1688-4596
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아이돌봄서비스상담전화	☎1577-2514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예유콜센터	☎1544-0079
여성가족부	☎02-2100-628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3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우리은행	☎1588-5000
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02-722-258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5
장애인보호조기구센터	☎1670-5529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청소년전화	☎1388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주요기관	연락처
코레일	☎1544-7788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02-3414-0111
태백케어센터	☎033-580-5200
하나원	☎031-670-9323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02-704-4332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600-3190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21
한국이치론	☎1644-1110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한국전력공사	☎123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정보화 교육	☎053-230-1392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00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306
해양수산부	☎044-200-5773~4
행정자치부 콜센터	☎02-2100-3399
현대해상	☎1588-5656
환경안전진단 콜센터	☎1800-0490

펴낸곳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강완구
사회보장총괄과장 고희우
사회보장총괄과 고민진, 이서진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본부장 최명경
범부처정보지원부장 황재운
범부처정보지원부 이창남, 박소현

인 쇄 : 2017년 4월

디자인 : (주)할로컴(02-3141-7522)

ISBN : 978-89-97676-39-2

정부 간행물 : 11-1352000-001921-10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이 책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에는 상업용이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